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
(2003년 9월 ~ 12월)

자료 모음 8.

테러방지법 관련 언론 보도

SAf1.14.7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
(2003년 9월 ~ 12월)

자료 모음 8.

테러방지법 관련 언론 보도

[국회] 테러방지법안 수정입법 추진
[속보, 사회] 2003년 08월 18일 (월) 21:09

국회 정보위 김덕규 위원장은 18일 “그동안 논란이 있어 심의를 중단해온 테러방지법안을 인권침해가 없는 방향으로 새로 개정해, 올 정기국회안에 입법처리하도록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전세계적인 테러방지 움직임에 동참하고 외국과의 원활한 정보협력 등을 위해 테러방지법은 꼭 필요하다”며 “기존의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 등에서 문제를 제기해온 만큼 정보위 차원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전혀 없는 법안을 새로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 법안은 국정원이 제안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법안이 될 것”이라며 “법안 성안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국가인권위, 민변, 시민단체등에게 법안내용을 사전에 알려주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방침”이라며 “현재 법안작업이 상당히 진척돼 있다”고 말했다. 백기철 기자 © 한겨레
(<http://www.hani.co.kr>)

국정원 '테러방지법'안 수정
[속보, 정치, 사회] 2003년 09월 19일 (금)
14:31

테러범죄·불고지죄 관련 처벌조항 삭제
軍동원 등 존치..정기국회 처리 추진

(서울=연합뉴스) 민영규 이충원기자 = 국가정보원은 '테러방지법(가칭)'의 조기 제정을 위해 이 법안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테러범죄 및 불고지죄 처벌관련 조항과 대(對) 테러활동 동원 군병력의 불심검문·보호조치 등 권한부여 규정을 삭제키로 하고 국회 정보위 및 관계기관과 협의에 나섰다.

19일 국정원과 정보위,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근 이같이 수정한 새 테러방지법안을 마련, 국회 정보위를 비롯해 국가인권위와 대한변협 등을 방문해 수정내용을 설명하는 등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법안은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 협약, 핵물질 방호 협약 등 9개 국제협약이 규정한 범죄를 '테러'로 규정하고, 유엔지정 테러단체 또는 이 단체와 연계된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을 '테러단체'로 규정하는 등 '테러'와 '테러단체' 개념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 국가대테러대책회의(의장 총리)의 의결권을 없애 심의기구로 만들고, 대책회의는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보호·경비를 위해 군병력 지원을 대통령에 전의토록 했으나, 당초 정부안

에 규정됐던 군병력의 불심검문, 보호조치, 위험발생방지 및 범죄예방조치 관련 규정은 삭제했다.

이와 함께 테러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및 미수범 처벌조항, 테러단체 구성 및 가입권유·선동자에 대한 처벌조항, 테러자금 조달·주선·보관자에 대한 처벌조항, 테러범죄 미신고에 대한 처벌조항 등도 삭제했다. 다만 처벌조항 가운데 허위신고에 대해선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유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테러와 관련, 통합방위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에 대해 이 법을 우선 적용토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그러나 그동안 인권단체들이 문제삼아온 국내 치안유지활동에 대한 군대 동원 조항과 국정원 산하 대테러센터 설치 조항, 대테러센터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수사권) 부여 등은 그대로 둠으로써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새 법안에서 일부 문제된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의 수사관할권을 확장하고 다른 국내기관까지 통합지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원의 개혁논의와 배치된다”며 “군대를 국내 치안유지활동에 동원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계엄선포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반대했다.

이에 앞서 김덕규(金德圭) 정보위원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테러방지 노력 동참을 위해 정부에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해 왔고, 우리 정보기관의 국제적 정보교류 및 공유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테러방지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었다.

정부는 미국의 9.11 테러 직후인 지난 2001년 말 무차별·극단적으로 자행되는 전쟁수준의 신종 테러행위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테러방지법' 입법에 나섰으나 정치권 일부 및 인권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심의가 지연돼 왔다.
youngkyu@yna.co.kr

테러방지법 왜 또 만들려 하나
[속보, 사회, 주간지] 2003년 09월 26일 (금)
16:57

인권단체들,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어 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정보위원회 김덕규 위원장(민주당), 합승희 민주당 의원들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테러방지법안 수정안을 만들었다. 2001년 국정원이 주도해 국회에 제출했다가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던 법안을

수정한 것.

9.11 테러 이후 세계 각국은 정보·수사기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률을 만들거나 개정했다. 이 법률들은 국가적 차원의 감시와 통제의 수위를 높여 시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가안보'의 당위를 내세우면서 '인권'을 쉽사리 무시해버릴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현재 제출된 테러방지법 수정안도 이런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정원 권한 강화 문제 있다"

수정안은 '테러' 및 '테러단체'의 정의를 "관련 국제협약 및 유엔의 지정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등, 1차 법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모호한' 부분들을 많이 삭제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그 본질적인 성격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분석하고 있다. 2차 테러방지법안 역시 주 내용은 '대테러센터'의 설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대테러센터를 만들어서 국정원의 산하에 두겠다는 것인데, 이는 곧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계수 울산대(법학과)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국정원은 이번 법안에서도 대테러센터의 설치·조직을 고집함으로써 애초 국정원이 목표로 했던 대테러조직의 설치에 대한 '법률적 승인'을 추구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된다면 국정원을 순수 정보수집기관으로 바꾸는 일이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법안에 의하면 '시설 보호 및 경비'의 역할을 위해 군대가 동원될 수 있도록 돼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국내 치안유지활동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비록 테러사태시라고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위헌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테러센터 만들어도 테러 막지 못할 것

테러방지법안은 실질적으로 테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이들이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해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기본적인 재난방지' 시스템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 그런데 대테러센터를 만들고, 테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을 체포하고,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테러를 막을 수 있을까.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장주영 변호사는 "정부차원에서 대테러활동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대책회의를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나 재난대책기구를 이용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국정원은 불필요하고 중첩되는 기구설치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인 테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최근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이에 대한 대응활동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는 30일에는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열어 테러방지법의 문제점과 제정 반대의 이유를 알릴 예정이다.

* '일다'에 게재된 모든 저작물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옮기거나 표절해선 안 됩니다.
© www.ildaro.com 여성주의 저널 '일다' 강진영 기자

국정원 키울 테러방지법 제추진 민주당·국정원 협의안 마련…국정원 위상·권한 대폭 강화

-인권하루소식 2003년 09월 19일 (금) 제 2418 호

지난해 제정이 무산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민주당과 국정원이 또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정보위원회(위원장 김덕규) 소속 민주당 위원들과 국정원은 최근 테러방지법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변협 등을 찾아가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 장세훈 조사관은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애초 원안에 비해 대폭 수정되었기에 큰 무리없이 여야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감이 끝나는) 10월 중순 이후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다음주 초 긴급 간담회를 갖고 대응방향을 결정키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법안에 대한 내부 검토를 긴급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문제조항 손봤지만 골격 그대로
이번에 마련된 테러방지법안은 지난해 인권단체들의 거센 반발과 국가인권위의 제정 중단 권고까지 받았던 애초 원안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수정했다. 총 15개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된 이 법안은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던 △모호한 '테러'와 '테러단체'의 개념을 좀더 명확히 하고 △대테러활동에 동원된 군병력의 불심검문·보호조치 등 권한 부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테러범죄와 단체구성, 불고지죄 등에 관한 벌칙조항도 모두 삭제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 역시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지탄받아 온 국정원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고 군대를 국내 치안유지활동에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큰 골격에서는 변함이 없다. 특히 국정원은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 '테러대책'을 명분으로 정보수집과 수사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관계부처들을 통합·지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개혁 대상 국정원에 큰 권한 부여
민변의 최병모 회장은 "이런 문제점 덩어리의 법안은 결코 제정되어선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최 회장은 "국정원이 수사 관할권을 확장하고 다른 국가기관까지 통합·지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위상과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게 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꼬집은 뒤, "수지 김 사건에서 이미 드러났듯이 국정원에서 수사권을 떼어내고 국내정보활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개혁방향과 전면 배치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와 함께 "군대를 국내 치안유지활동에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계엄선포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계수 교수(울산대 법학)도 "이 법안은 국정원 산하에 큰 권한을 가진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정원 개혁 논의는 진행하지 않으면서 국정원의 힘을 키우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테러방지법으로 테러 예방 안된다"

이 교수는 또 "9·11 이후 미국에서 반테러를 명분으로 수사기관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고 시민적 자유가 제한됐지만 테러 위험은 오히려 높아져 이제는 공화당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권침해 위험까지 감수하고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고 테러가 예방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현행법과 제도로도 테러 예방과 진압 등을 위한 통합적 체계와 광범위한 권한이 확보돼 있고, 테러방지법안에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면 법 제정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배경내]

<논평> 파병과 테러방지법이 이끄는 '죽음'의 쌍두마차

- 인권하루소식 2003년 09월 20일 (토) 제 2419 호

9·11 테러 이후 미국은 대외적으로는 테러지원국을 응징한다며 아프간과 이라크를 침략했고, 대내적으로는 반테러법을 제정하여 정보기관에 수사권을 줬다. 나아가 부시의 미국은 자신이 만든 흑백논리를 들이밀며 전 세계를 향해 '반테러연대'에 동참할 것을 강요했다. 침략전쟁과 반테러법이라는 두 마리의 말이 이끄는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미국은 자신의 세계패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지난 3월 시작된 이라크 전쟁은 아무런 명분도

없고 유엔의 결의조차 거치지 않은 침략전쟁에 다름 아니었다. 이라크 민중에게 미국이 '해방자'가 아닌 '침략자'로 인식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는 이슬람 전사들만이 아니라 이라크 민중들도 미군을 공격하고 있다. 의기양양하게 종전을 선언했던 부시는 이러한 이라크의 저항 앞에 베후 남전에서와 같은 좌절을 맛보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제정된 패트리어트법 역시 '인권에 대한 테러'에 다름 아니었다. 미국민들은 지금 테러의 위협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대된 현실에서 수사권까지 거머쥔 정보기관에 의해 일상적인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반테러연대'에 동참을 선언하고 각종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왔던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무소불위의 수사기관들 앞에 인권이 무너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미국은 반테러를 명분으로 국내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해외에서는 침략전쟁을 벌이며 테러와의 전쟁을 세계화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은 자신이 파놓은 수령에 같이 빠져죽을 한국 동맹군의 추가 파병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내에서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비상식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이 제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패권 전략을 그대로 쫓아 전투병을 파병하고 테러방지법까지 제정했을 때 초래될 파괴적 결과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12억 이슬람 민중들에게 침략자의 뜰마니로 찍히는 것은 물론 피의 악순환을 불러오게 될 것이고,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격상한 국정원에게는 우리의 자유를 저당잡히게 될 것이다.

그러하기에 '평화와 인권의 죽음'을 재촉할 뿐인 파병과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논평> 국정원 개혁, 왜 안 하나

- 인권하루소식 2003년 09월 27일 (토) 제 2424 호

최근 법원은 이른바 '안풍' 사건 관련자들에게 실형과 더불어 총 856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당시 여당의 선거 자금으로 불법적으로 사용됐던 1천억원 이상의 돈 중 안기부 예산에서 지원됐던 돈이 856억원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을 보는 국민들은 자신의 세금으로 이뤄진 안기부 예산이 당시에 어떻게 특정 세력의 정권 유지 수단으로 무단 전용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분노는 할지언정 그다지 새삼스럽게 여기지 않는다.

중앙정보부, 안기부를 거쳐, 지금의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만 있었을 뿐 정권 안보 기관으로 기능하며 숱한 권력 남용과 인권침해를 자행해왔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길 교수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 의문의 죽음에는 이 정보기관에서 자행한 고문과 사건 조작,

공작 정치가 있었다. 1987년 발생한 '수지 김 살해 사건'에 대한 은폐와 조작은 심지어 2000년도 까지 계속됐다. 도청 의혹, 사찰 의혹도 끊이지 않았다. 국정원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정권의 안보를 위해 권력자들은 이 기관의 힘을 의지했고, 비밀스런 정보기관은 그래서 온갖 불법과 탈법을 일삼아왔다.

국정원이 국민의 통제에서 벗어난 '비밀의 성'으로 남아 있는 한 이런 문제는 언제나 잠복해 있을 수밖에 없다. 수사권까지 갖고 있는 정보기관인 이상 무엇이라 이름을 바꾼들 국민들에겐 공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하기에 주요 정당의 후보들마저도 지난 대선에서 하나같이 국정원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다. 국정원 개혁 논의의 핵심 축은 국정원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정보 수집 기능은 해외 정보에 국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기관의 민주화는 국정원의 활동과 예산에 대해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기밀, 비밀 활동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새 정부 들어서도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 움직임은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 도리어 정보기관에 정부 부처를 지휘,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테러방지법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 판국이다.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새로 설치해 관계 기관의 대테러 활동을 총괄 지휘하도록 한다니 옛 남산 시절의 통제불능의 권능을 가진 정보기관으로 부활시키자는 것인가?

정부는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반대로, 국정원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개혁 작업에 더 이상의 지체 없이 나서라.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입법 중단·국정원 개혁 촉구
<인권하루소식> 10월 1일

"안전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는 국민은 안전과 자유 모두를 누릴 자격이 없다." - 벤자민 프랭클린

지난해 많은 논란 속에 입법이 무산된 테러방지법이 또다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입법 저지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산인권센터 등 60여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은 30일 오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의 중단을 촉구했다.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을 현 정부에 기대하고 있었던 우리는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목적으로 하

는 테러방지법의 제정 추진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오랜 피와 땀을 통해 성취한 현 수준의 민주주의와 인권마저도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법안은 테러범죄와 단체구성, 불고지죄 등에 관한 벌칙조항을 삭제하는 등 지난해 문제점으로 지적된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지만, 국정원 내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해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을 총괄·지휘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은 "한때는 월드컵을 평계삼더니 이제는 또 무엇을 이유로 내걸 것인가"라고 물으며 테러방지법의 추가 입법에 어떠한 명분도 있을 수 없음을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테러방지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 테러를 포함한 안전업무나 재난관리업무 등은 기존 국가기구에 의해 이미 수행되고 있는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를 중복해서 둘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 민변의 장주영 변호사는 "국정원은 현재 대테러정책기구의 효율성이 멀어진다고 하지만, 효율성으로만 따지자면 중앙정보부 시절이 최고였다. 그때로 돌아가자는 말이냐"고 되물었다.

또 장 변호사는 비밀조직인 국정원에 대한 외부통제기제의 부재를 지적하며 "국정원은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인 테러에 관한 정보만 수집하면 되고,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대테러정책의 결정과 집행은 일반 행정기관이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계수 교수(울산대 법학)는 9·11 이후 세계적으로 시민권이 제약되고 반테러법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정보기본권을 침해하는 새로운 법률들이 제정되고 있는 경향을 지적하며 "각국의 보수공안세력들이 9·11을 자신들의 권한 강화의 계기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테러방지법은 사실상 대테러센터의 조직 및 권한에 관한 법률이라는 점 △법안에 국정원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없는 점 △국내 치안문제에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는 점 △테러방지법 안에 대한 공개적 논의가 없었던 점 등을 비판했다.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은 향후 테러방지법에 관한 의견을 정부와 관련부처에 전달하기로 하고 지난 대선 후 중단된 국정원 개혁에 관한 논의를 공론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대홍]

시민단체,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9월 30일, YT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 민중연대 등 16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서울 중구 민

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국가정보원 권한 강화와 인권침해 등의 문제로 지난해 무산됐던 테러방지법이 국정원과 정치권에 의해 다시 추진되고 있다'며 '테러방지법 수정안도 국정원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본질적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익진)

<연합뉴스 9. 30> 시민단체,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서울=연합뉴스) 정운섭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민중연대 등 16개 시민사회단체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국가정보원 권한 강화와 인권침해 등의 문제로 지난해 무산됐던 테러방지법이 국정원과 정치권에 의해 다시 추진되고 있다"며 "테러방지법 수정안도 국정원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본질적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안보유지와 테러대응 활동을 위해서는 현재의 법과 제도를 보다 민주적으로 개편하는게 시급한 현실"이라며 "국정원과 정치권은 테러방지법 제정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jamin74@yna.co.kr)

시민단체,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 민중연대 등 16개 시민사회단체는 30일 오전 서울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가정보원 권한 강화와 인권침해 문제로 지난해 무산됐던 테러방지법이 본질적 내용 변화 없이 국정원과 정치권에 의해 다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안보유지와 테러대응을 위해서는 현재의 법과 제도를 민주적으로 개편하는게 시급하다며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03년 9월30일 오전 9:37 SBS)

[9·11 이후 세계의 반테러법] 테러 공포에 인권은 없네
[속보, 주간지] 2003년 10월 01일 (수) 16:00

9·11테러는 각 나라 정보기관에게 있어 냉전 이후 초라해져 가는 자신들의 위상을 단번에 일으켜세워준 '고마운' 사건이었다. 각국 정보기관들은 테러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을 이용해 시민의 자유권을 약화하고 정보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했다.

직접적 피해자인 미국은 9·11 직후 '애국자법'(Patriot Act)을 제정해 시민의 자유권 제약에 나섰다. 이 법은 용의자의 자산을 비밀리에 수색해 증거를 압수하고, 용의자들에게는 법원의 영장발부 사실을 추후에 통보해주는 등 테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법무부에 부여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연방수사관들이 법원의 승인 없이도 용의자나 증인을 소환할 수 있는 '제2 애국자법'(Patriot Act II) 추진에 나서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영국은 최근 무기박람회에 반대하는 시민운동가에게 '반테러법'(Anti-Terrorist Law)을 적용해 시민사회에 거센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으며, 중국은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독립요구를 짓밟는 명분으로 '반테러'를 들고 있다. 스페인 정부 역시 '반테러'의 세계적 추세를 들어 바스크 분리주의자들과 그 지지자들을 탄압하는 한편, 이민자들과 망명객, 난민 등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인권침해 논란도 뜨거워지고 있다. 미국의 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www.aclu.org)은 최근 연방수사국 요원에게 비밀수색 등을 허용하는 애국자법 조항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인권단체인 허먼라이트워치(www.hrw.org)도 지난 3월 '반테러의 이름으로-전세계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영국, 중국, 스페인 등 10개국에서 반테러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인권침해 현장을 고발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제연합인권위원회의 대표단과 조사단원 등도 지난 6월 성명을 통해 "테러리즘과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인권운동가들이 위협당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와 난민, 조국의 주권을 위해 싸우는 이들, 경제세계화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 등 사회·경제적 약자집단이 반테러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대테러 정책은 반드시 국제적인 인권기준 아래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공안 정국의 망령이 우리나라에서는 테러방지법으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계수 울산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는 테러의 대부분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반대하는 국제테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우선 한국이 국내 테러조직이 존재하는 나라인지 혹은 이슬람 테러세력이 주된 목표로 삼는 나라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테러방지법 제정을 서두르는 이유는 결국 세계적인 공안 분위기를 이용해 자신들의 조직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국정원이 '테러' 할라
[속보, 주간지] 2003년 10월 01일 (수) 16:12

개혁보다는 세불리기에 급급하다는 지적

조직이론에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용어가 있다. 공무원 수는 실제 업무량에 관계없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인데, 관료조직의 속성상 끊임없이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내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또 다시 일거리를 만들어낸다는 법칙이다. 냉전 종식과 민주화 이행 이후 점점 더 할일이 없어지면서 어느덧 조직축소 압력까지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도 '파킨슨의 법칙'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지난해 시민사회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좌초됐던 테러방지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자, 조직축소 여론에 시달리고 있는 국정원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나선 것이라는 '뼈 있는 농담'이 시민사회에 떠돌고 있다.

시민단체 방문해 수정안 설명회 가져

국정원은 이달 초 대테러과장 등 관계자 5명이 참여연대를 방문해 민주당이 낸 테러방지법 수정안 설명회를 가졌다. 10월 안에 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부산하게 움직이는 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물론 이번에 마련된 수정안은 지난해 큰 반발을 산 원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상당 부분 고쳤다.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테러'와 '테러단체'의 개념을 좀더 명확히 했고, 군병력의 불법검문과 보호조치 등 권한 부여에 관한 규정을 삭제했다. 또 테러범죄와 단체구성, 불고지죄 등에 관한 벌칙 조항도 모두 없앴다.

그러나 이번 수정안도 국정원 권한 강화와 군대를 국내 치안유지에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뼈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이 정한 '국가대테러대책회의'는 테러정책의 수립과 테러사건 대응, 테러 예방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심의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또한 테러현장에서의 대테러 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해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대외·군사 정책과 국내 정책 수립 등의 역할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고, '테러사건대책본부'도 중앙·지방의 긴급구조본부와 사고대책본부 등의 기능과 중복된다.

특히 이번 법안은 순수한 테러 '방지'를 위한 법률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대테러센터라는 특정 '조직'의 역할과 권한을 규정한 법률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법안에서 '대테러센터'는 △테러 징후의 탐지·경보 △테러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대테러활동의 기획, 지도 및 조정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에 대한 지원 △외국 정보기관과의 테러 관련 정보협력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의 위기관리센터가 이미 각종 국가위기 예방 및 관리체계에 관한 기획 및 조정 업무, 긴급사태 발생시 초기 조치, 국가 재난·재해 관리체계의 종합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비슷한 기능의 조직이 또 하나 생기는 셈이다. 장주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변호사는 "국정원장 소속하에 대테러센터를 둔다는 것은 광범위한 대테러활동을 정보기관이 주도하면서, 관계기관에 설치된 '테러사건 대책본부'를 통해 관련 행정부처를 장악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점이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안 통과에 심혈을 기울이는 실질적인 이유"라고 분석했다.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은 테러와 관련된 혀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 즉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테러센터의 조직과 정원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 사실상 '비밀조직'으로 운영된다. 이는 수사권을 갖는 경찰기능을 수행하고, 비상시에는 국민의 권리까지 제한할 수 있는 막강한 조직이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비밀리에 운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대테러센터의 장인 국정원장이 시설 보호 및 경비를 위해 군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국내 치안유지 활동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계엄하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이 시민사회의 판단이다.

국정원은 "현재 14개 대테러 유관기관이 활동하고 있지만, 소관사항에 따른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뿐, 테러에 이용될 여지가 있는 위험물질 안전관리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보호 등의 업무를 전담해 처리하는 기관은 없다"며 "게다가 우리가 이라크전 지원국가이기 때문에 테러 가능성은 상존해 있고, 국제사회도 반테러법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이번 법안이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낸 수정안에 불과하고, 국정원은 이를 관망할 뿐이라고 항변 한다. 테러 방지 필요성에 따라 국회가 알아서 법안 제정을 재추진하는 것일 뿐 국정원은 개입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민주당 합승희 의원실은 "국정원과 상당 부분 협의를 거친 법안"이라고 일축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원이 개혁은커녕 권한 강화에만 몰두하면서 테러방지법 제정을 또다시 추

진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였다. 테러방지법은 일부 조항을 삭제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법안 자체가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부에서는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에 대한 '애정'을 '조직보위 투쟁', 또는 국정원 직원의 '사회보장법안'이라며 냉소를 보내고 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 개혁이 과제로 제기되자 조직축소에 대한 불안감이 테러방지법을 통한 권한 강화 기도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특히 고영구 국정원장 임명과 정에서 한나라당이 아예 국정원을 해외정보만 담당하도록 축소·개편하자는 의견을 내자 국정원의 초조함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

"테러 가능성 때문에 입법 불가피"

이계수 울산대 법학과 교수는 "국정원은 '대테러 센터'가 설치되면 조직 축소 또는 개혁 요구로부터 한발 비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때문에 시민사회가 반대하는데도 국정원이 이 법안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1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을 구성해 테러방지법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들어갔다. 지난해 테러방지법 제정 중단 권고를 했던 국가인권위원회도 법안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그대로 '정보' 중심기관으로 거듭날지, 아니면 테러방지법을 등에 업은 '테러단체'라는 오명을 쓸지 지켜볼 일이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①

- 인권하루소식 2003/10/15 (2434호)

세계를 휩쓴 광기, '테러와의 전쟁'

국정원이 또다시 인권을 볼모로 자신의 권한만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은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의 가공할 위협과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을 종4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2001년 9월 21일 이집트 출신 물리학자 아메드 알레나니 씨는 미국 뉴욕 거리에서 경찰에 체포돼, 테러 연루 혐의를 받고 이후 5개월 동안이나 감옥 신세를 져야 했다. 그의 차에 있었던 세계 무역센터 사진 2장이 그가 테러용의자로 몰린 이유. 미 수사당국은 그가 테러에 연루됐다는 증거를 끝내 제시하지 못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가 밝힌 이 사례는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이 낳은 수많은 인권침해 목록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에서 9·11 이후 테러 용의자로 몰려 구금된 사람은 자그마치 1천 2백 명 가량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은 중동 혹은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들이었다. 쿠바 관타나모 만 미군 기지에 구금된 650여명의 존재는 '테러와의 전쟁'이란 이름 하에 벌어진 가혹한 인권침해의 대명사로 꼽힌다. 미 정부는 아프간 전쟁 포로 혹은 알 카에다와의 연계 혐의로 갇혀 있는 이들에게 제네바 협정 적용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미국 사법관할권(혹은 영토) 밖이라는 이유로 미국 법률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까지 깡그리 무시했다.

'테러와의 전쟁'에서 내국인도 자유로울 수 없다. 미 정부가 대테러 명분으로 뛰렸던 혐의도 없는 평화운동가나 시민단체 회원 등의 명단까지 비밀리에 만들어 이들에 대한 공항 보안검색을 더욱 철저하게 하도록 해 왔다는 사실은 그 단적인 예다.

인권탄압의 법제화, 반테러법

이러한 인권침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들은 9·11 이후 쏟아진 각종 반테러 법률과 조치들이다. 미국은 9·11 직후인 2001년 9월 13일 테러퇴치법을 시작으로 10월 25일 패트리어트법을 통과시켰다. 곧 이어 11월 13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테러용의자에 대한 특별 군사법정의 설치를 발표했다. 패트리어트법은 수사당국이 테러 용의자를 언제든 압수수색, 구금, 추방할 수 있도록 했고, 은행 기록과 전화 및 인터넷에 대한 감청권까지도 확대시켰다. 나아가 현재 미 정부는 비밀정보기관과 연방수사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내안전강화법안', 이른바 패트리어트 II를 입안해 놓은 상태다.

영국에서도 2001년 12월 새로운 반테러법이 통과된 후, 테러 용의자들은 기소나 재판 없이 구금되었다. 휴먼라이츠 워치는 올해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영국 경찰이 9·11 이후 명백한 혐의가 없는데도 특정 인종·민족·종교 공동체를 표적삼아 그들을 마구잡이로 체포했고, 그 숫자가 3백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인도에서는 "기존 법으로 충분하고 테러방지법은 불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한 채 2002년 3월 테러방지법이 제정됐고, 내부의 정치적 반대자와 종교적 소수자, 달릿(불가촉천민) 등이 테러방지법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고 휴먼라이츠 워치는 말한다.

2003년 3월 발표된 국제인권연맹(FIDH)의 보고서에 따르면, 반테러법이 새로 통과된 다른 나라들에서도 난민과 이민자의 권리 침해,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 등 자유권에 심각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의 최대 수혜자=정보기관

각국의 반테러법 혹은 조치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경향은 △정보기관의 강화 △외국인의 지위 및 권리의 약화 △모든 사람의 자유 축소로 압축된다. 사적이고 내밀한 공간은 전 방위적인 감시의 위협 하에 놓이게 됐고, 국가기관들의 정보 수집, 조사 활동은 한층 강화됐다. 비밀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분리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9·11이 빚어낸 세계적 공안정책을 자신들의 권한 강화의 계기로 심문 활용한 것이다. 그리고 '테러방지'는 인권침해를 정당화하고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이에 대해 이계수 교수(울산대 법학)는 "우리가 귀 따갑게 들어온 안보논리가 국가보안법과 연계되면서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제약했듯이, 미국의 안보 논리는 '반테러법'과 결합하면서 외국인·정치적 소수자의 인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주영]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②

테러방지법이 약속하는 '공포사회'의 테러'

2004년 12월. 이라크에서 장기전의 끈에 빠진 미국은 한국의 전투병 추가파병을 요청하기 위해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다시 한국에 파견했다. 럼스펠드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인 평화운동가 한 사람이 '이라크 침략과 파병 압력 중단'을 외치며 그를 향해 페인트 풍선을 던졌다. 주요 외국인사의 신체에 위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그 평화운동가는 '무시무시한 테러리스트'로 둔갑해 처벌을 받았다. 그로부터 1년 후, 그가 속한 단체는 우연히 국정원 산하 대테러센터가 자신들의 전화와 이메일은 물론 각종 활동까지 사찰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정책에 맞선 인간 방패 활동으로 평화운동의 대명사로 떠오른 '국제연대운동'. 2004년 8월, 이 단체 활동가들은 걸프전과 이라크전에서 맹위를 떨친 미국의 열화우라늄탄이 일본으로 대량 수출된다는 정보를 입수. 일본 근해에서 수송선 주변을 돌며 무기거래 반대 맷목시위를 벌였다. 이 단체 활동가들이 '2005 서울 국제평화회의' 참석차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자, 대테러센터는 테러의 위협이 있다는 이유로 이들의 입국을 금지시켰다. 이들의 맷목시위가 전쟁 억제와 국방이라는 '평화적 목적'의 핵물질 수송을 방해한 테러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아흐마드. 그는 요즘 수상한 사람들이 미행을 한다는 느낌을 계속해서 받곤 한다. 전화기의 감도 떨어졌다. 아시아 정상회담의 서울 개최를 열흘 정도 앞둔 어느 날, 난데없이 강제출국 명령이 떨어졌다. 그가 테러단체로 규정된 '제마 이슬라미야'와 관련이 있다는 얼토당토 않은 이유였다. 하지만 그에겐 해명할 기회도,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주어지지 않았다. 아흐마드 씨의 사건을 접수한 한 인권단체는 그가 테러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대테러센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비판하는 글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대테러센터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이 인권단체의 대표를 감옥으로 보냈다.

대통령 선거와 국제안보연례회의를 동시에 앞둔 2007년 가을. 대테러센터는 테러의 위협이 높아지며 정부종합청사와 공항, 주요 지하철역 등에 경찰 특수부대를 배치했다. 며칠 후에는 시설보호 인력이 부족하다며 군대까지 동원해 오가는 시민들의 가방을 뒤지고 '수상한 인물'들을 현장에서 마구잡이로 연행하는 등 사실상의 '제엄상태'가 초래됐다. 광화문역에서 대테러센터의 직원에 의해 부당하게 연행돼 영장도 없이 구금된 채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던 김종현 씨는 사흘만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김 씨는 가해자를 고소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했지만, 자신을 연행하고 수사한 대테러센터 직원의 이름조차 알 수 없었다. 이들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상은 최근 국정원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경우, 우리에게 '약속된 공포사회'의 모습들이다.

현 테러방지법안은 △항공기의 불법납치억제를 위한 협약 등 9개 국제협약이 범죄로 규정하고 국가 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고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해 각종 대테러활동의 기획·지도·조정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센터의 장인 국정원장이 의심스러운 외국인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그의 추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군·경 특수부대의 출동과 시설 보호·경비를 위한 군병력의 동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센터의 직원들이 테러와 관련한 허위사실의 신고 또는 유포 등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테러'의 개념을 국제협약으로부터 끌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 개념이 여전히 매우 포괄적·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아 시민과 민간단체의 정당한 활동마저도 '테러행위'로 규정될 위험성이 높다. 또한 국정원에게 전체 사회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권과 광범위한 수사권, 외국인 추방 요구권까지 부여함으로써, '공포사회'를

지배하는 빅 브라더'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될 경우,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가 우리 사회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는 것이다. [배경내]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③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 새 날개 단다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독재권력의 위험성을 꼬집는 이 말이 '음지에서 일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의 일상 곳곳에 감시의 촉수를 들이댈 수 있는 이들 비밀정보기관이 '국민이 아닌 정권과 조직의 안보'를 위해 권한을 남용해온 일은 줄곧 있어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갖고 있을 때의 위험성이란 가공할 만하다. 수사권을 가진 정보기관의 몇 안 되는 역사적 사례로는 나치-독일의 게슈타포, 구 소련의 KGB, 구 동독의 슈타지가 흔히 꼽힌다. 이들 악명높은 '공포정치'의 주인공 가운데 대표주자격인 게슈타포는 '초법적 예비검속'으로 수많은 지식인과 유대인, 노동운동가들을 강제수용소로 보냈다. 엄청난 밀고자를 주민 가운데 심어놓은 것으로 유명했던 슈타지 역시 둘째가라면 서럽다. 아직도 부모들이 아기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수타지 온다"고 말할 만큼, 구 동독에서 암암했던 이 정보수사기관이 가져온 일상적 공포는 위력적이었다.

정보수사기관, 공포정치의 엔진

바로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분리 원칙을 채택해 특정 정보기관에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교훈과는 거리가 먼 국정원이라는 거대 권력기관이 떡 하니 자리 잡고 있다.

'국정원=고문수사', '국정원=공작정치'라는 등식이 아직도 자연스레 받아들여질 만큼, 이 정보수사기관은 우리 현대사에서 수많은 조작사건과 권력형 비리사건의 제조기 노릇을 해 왔다. 70년대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과 인혁당재건위 사건, 87년 '수지김 사건'을 비롯한 각종 용공조작사건은 물론, 안기부 예산을 특정 정당의 선거자금으로 유용했던 '안풍' 사건과 각종 '권력형 게이트' 뒤에도 어김없이 이 기관이 등장했다.

이 모든 일은 중앙정보부에서 안기부를 거쳐 오늘날의 국정원으로 문폐를 바꿔 달면서도 비밀의

장막 뒤에 몸을 숨긴 채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비밀수사를 전개할 수 있는 알짜배기 권한만은 내놓지 않았기에 가능했다. 더구나 대통령 직속의 국정원은 다른 행정부처는 물론 국회의 견제 조차 거의 받지 않는다. 예산과 조직, 구성원을 비밀에 부친 채, 법원의 허가도 받지 않고 광범위한 감청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누려왔다. 불법구금, 고문, 불법 도청 등에 대한 의혹이 일 때마다 국정원은 법이 보장한 '비밀주의'라는 엄호막 뒤로 숨어버리곤 했다.

비밀의 장막 뒤 초법적 권한 누려

물론 현 고영구 국정원장 체제하에서 일정한 내부개혁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최근 국정원은 탈권력화와 탈정치화를 기치로 '조직 내 노른자위'로 불리는 2차장 산하 대공정책실을 축소·개편하고, 국내 보안사법에 대한 수사권도 검·경에 이관했다. 사찰성 정보수집 업무와 정부·언론 등에 대한 상시 출입 관행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권 자체와 과도한 비밀주의에는 전혀 손대지 않았다. 언제 후퇴할지 모르는 내부개혁만 단행됐을 뿐, 권력 행사의 투명화를 강제할 제도적 통제 장치는 전혀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단체들이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위한 법일 뿐"이라고 비판하는 테러방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정원은 새로운 권한들을 대거 챙길 수 있게 된다. 대테러활동을 빌미로 다른 국가기구들을 지휘·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 특수부대나 군병력 출동 요청권, 외국인 추방 요구권까지 갖게 되는 것이다.

국정원에 새 날개 달아주는 테러방지법

무엇보다 국정원이 테러방지를 빌미로 영장도 없이 광범위한 감청과 사찰을 일상화할 위험이 높 후하다.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도 일련의 반테러 법률과 조치에 따라 무분별한 감청과 비밀수사를 통한 사회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계수 교수(울산대 법학)는 "테러방지법이 먼저 시행된 외국에서 실제 이 법에 따라 기소되고 재판을 받은 테러혐의자는 소수에 불과하다"며 "실제로 이 법은 테러방지보다 전국민을 상대로 한 정보수집과 사회통제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말한다. 과거 '반공과 국가보안법'에 기대 공포를 주입해 왔던 국정원이 이제는 '반테러리즘과 테러방지법'이라는 날개를 달고 그들만의 자유를 계속 보장 받게 될 위험성이 짙어진 것이다. [배경내]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④ <끝>
테러로부터의 안전, 평등과 평화로부터 온다

인권하루소식 10월 29일

3년 째 테러방지법 제정에 집착하는 국정원에 대해 절로 생기는 의문이 있다.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테러를 예방하거나 진압할 수 없는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2월 내놓은 의견서에서 '현행법과 제도가 테러 행위에 관한 정보수집과 예방, 진압과 처벌을 위해 다양한 국가기관에 전문적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법무부, 경찰, 국정원은 물론이고 군대와 건설교통부, 관세청까지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

그렇다면 통합적인 대응 체계가 없어서 문제인가? 장주영 변호사는 "재난관리법이 국정원이 내놓는 테러방지법보다 더 효율적"이라며 "재난관리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체계를 효과적으로 꾸릴 수 있다"고 말한다. 자연재해가 아닌 재난에는 테러로 인한 피해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다른 기관들이 관련 업무를 한다 해도 해외와 정보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이 국내에 분산된 정보들을 총괄해야 한다"며 테러방지법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다. 이에 대해 이계수 교수는 "해외와의 정보교류협력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특정한 목적을 위해 수집된 정보는 그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는 프라이버시 보호의 중요 원칙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분산된 정보들을 함부로 총괄하려는 국정원의 구상을 비판한다. 장 변호사 역시 "국정원 식대로라면 중앙정보부 때가 가장 효율적이었을 것이며, 이는 곧 권한을 남용하겠다는 의미"라고 꼬집는다. 문제는 민주적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비밀정보기관 간의 정보교류이고,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줄이라고 요구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이제는 국정원의 논리를 쫓다 곧잘 잊어버리게 되는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한다. 이른바 '테러'는 왜 발생하는가? 이계수 교수는 오늘날의 테러를 "신자유주의의 세계화가 폭력적으로 관철되며 미국에 의한 일국 지배 체제가 공고화되고 있는 시대상황의 필연적 결과물"이라고 본다. 소수의 나라, 소수의 사람들 손에 권력과 부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주변화된 나라 사람들의 절망적인 몸부림의 한 형태가 '테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테러'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가? 국가기관의 물리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초강력 통제국가, 이스라엘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결국 진정 안전을 원한다면, 나라간 사람들간의 빈부 격차를 줄이고 평화를 증진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주영]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반대" 재확인
-인권하루소식 2003년 10월 24일 (금) 제
2441 호

"테러방지, 기존 체계로 부족함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테러방지법 입법 재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가인권위는 22일 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28일 상정될 예정인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제정 반대의 의견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인권위의 이러한 의견을 수용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제1소위의 한 위원은 "테러방지는 필요한 일이지만, 기존의 법과 체계로 테러에 대응하는 데 특별히 부족함이 없다"며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의 이유를 설명했다.

외국인의 권리침해는 원안보다 더 개악

나아가 이 위원은 "이번 수정안은 오히려 기존 안보다 개악된 부분도 있다"며 "예를 들자면, 테러를 할 우려만 있어도 입국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국제인권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8조 외국인 출입국 규제 등에 관한 조항은 대테러센터의 장, 곧 국정원장이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규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도 앞서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테러방지법안이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비시민(외국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 위원은 "이미 국가인권위는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이번에 결정된 의견은 그것을 재확인하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해 2월 20일 채택한 의견서에서 "현행법과 제도가 … 테러행위의 예방과 진압, 수사와 처벌을 위해 다양한 국가기관에 전문적 기능을 부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대한 테러 사태에 대비해 … 통합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테러행위를 예방, 진압 및 처벌하기 위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기 위한 국내법과 제도는 전반적으로 국제인권법이 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당시 국가인권위는 몇몇 독소조항의 삭제 혹은 부분적인 개정이 아니라, 테러방지법안의 제정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주영]

인권위, 테러방지법 제동

[속보, 사회] 2003년 10월 24일 (금) 14:52

(:::"테러 우려만 있어도 입국막으면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입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권위(위원장 김창국)는 2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오는 28일 상정될 예정인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전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2001년 말부터 테러방지법안의 입법을 추진했으나 인권위와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이라크 파병 결정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원안을 일부 수정, 입법을 재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국정원이 제출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의 제 8조 외국인 출입국 규제 등에 관한 조항은 대(對)테러 센터의 장, 즉 국정원장이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 규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강명득 인권정책국장은 "외국인이 테러를 할 우려만 있어도 입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며 "국정원이 도리어 개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국장은 또 "수정안 3조에서 국가 대테러 대책 회의(의장 고건 국무총리)의 의결 권한을 삭제하고 심의기능만 남긴 것은 국정원 장의 권한을 제어할 제도적 장치를 없앤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20일 발표한 의견서에서 테러방지법의 부분 적인 수정이 아니라 법안 제정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었다. 유회경기자 yoology@munhwa.co.kr

인권위, '테러방지법 수정안 반대'

[속보, 사회] 2003년 10월 24일 (금) 16:51

[이대건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 국회에 상정돼 곧 심의 예정인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관한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현재 수정안이 형식적으로는 상당부분 축소 조정됐지만 내용상으로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수정안에 나타난 테러방지법의 목적이 '테러로부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한다'고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어 자의적인 법 집행의 우려가 더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수정안 법률의 적용 범위나 테러대책기구의 권한에 대한 제도적인 제어 장치도 없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고 출입국 규제 범위

가 확대돼 외국인에 대한 차별 소지가 강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대건 [dglee@ytn.co.kr]

"테러방지법 개악" 인권위 수정안 반대 표명
[속보, 사회] 2003년 10월 24일 (금) 18:54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28일 국회에서 상정·심의될 예정인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해 입법 반대의견을 표명키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기존 테러방지법 원안과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수정안이 형식적으로는 상당부분 축소됐지만 내용상으로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악됐다고 주장했다. <정유진기자 sogun77@kyunghyang.com>

"테러방지법 수정안 개악" 인권위, 국회 심의 반대
[속보, 사회] 2003년 10월 24일 (금) 21:09

[중앙일보 김정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서 심의 예정인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해 "원안에 비해 내용면에서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악된 부분이 많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당수 독소조항이 그대로 남아있다"며 반대의견을 국회에 공식 제출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반대 이유로 ▶현행법과 제도로 테러방지대책이 가능해 별도 입법 추진 근거가 부족▶특수부대 출동요청 등 위험소지▶정보기관 권한 강화에 따른 기본권 제한 등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에도 국정원이 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하자 반대입장을 밝혀 국회 통과를 무산시킨 적이 있다. 김정하 기자 wormhole@joongang.co.kr

국회 테러방지법 연내 처리

[속보, 정치, IT] 2003년 10월 26일 (일) 06:00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 국회는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에 따라 국내외에서 테러위험도가 높아졌다고 보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추진중인 테러방지법을 연내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보위원회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안을 상정, 심의를 시작하고 필요할 경우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정원은 이에 앞서 지난 9월 중순 테러방지법안 가운데 인권침해 논란 대상이 된 테러범죄 및 불

고지죄에 대한 처벌 조항과 대(對) 테러활동에 동원된 군병력에 대한 불심검문·보호조치 권한부여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김덕규(金德圭) 정보위원장은 26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테러방지 법을 연내 제정한다는 목표를 갖고 입법에 반대하는 인권단체 등을 적극 설득중"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으로 테러방지법 제정이 시급한 과제가 됐으며, 늦은 감이 있다"면서 "법안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정보위원회간 큰 이견이 없어 정기 국회 회기중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咸承熙) 의원도 "국정원의 수정안엔 인권침해 부분이 거의 없어 적절하다는 생각"이라며 "제정법인 만큼 공청회 등을 거쳐 반대입장에 선 분들을 설득하더라도 연내에는 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ngkyu@yna.co.kr

"테러방지법 개악' 인권위 의견 지지"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은 25일 성명을 내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심의 예정인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해 "내용상 개악된 부분이 많다"며 내놓은 입법 반대의견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 단체는 "인권위의 자격대로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형식만 바뀌었을 뿐 사실상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악됐다"며 "법률의 적용 범위나 테러대책기구의 권한 등에 대해 별도의 제어장치가 없는 수정안은 자연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지난해 월드컵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무사히 치르고도 또다시 테러방지법 제정을 들고 나오는 것은 구태의연한 발상"이라며 "국정원은 철저한 쇄신을 통해 본연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prayerahn@yna.co.kr (끝)

2003/10/25 08:40

<인권하루소식 10월 29일>

국회 정보위, 내달초 테러방지법안 공청회 개최 국가인권위, 소속 의원들에 법 제정 반대 의견서 전달

국회 정보위원회가 내달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강당에서 국정원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28일 국회 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특히 이날 회의는 일부 언론을 통해 정보위 김덕규 위원장을 비롯한 간사 의원들이 연내에 테

러방지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에 열린 것이어서 그 결과에 눈과 귀가 쏠렸다. 정형근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라크 추가 파병이 결정됨에 따라 테러방지법 제정이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 의원과도 협의해 올해 안으로 법안을 처리 키로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행히 이날 회의에서는 연내 입법에 대한 명시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청회 개최 이후 심의일정을 추후 논의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위 장세훈 조사관은 "일단 오늘은 공청회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만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이 나오게 된 데에는 인권단체들의 비판에다 이날 오전 국가인권위원회가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의견서를 정보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장 다음주 초에 무리하게 공청회 날짜가 잡힌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정보위가 법안의 연내 통과를 이미 의중에 두고 있으면서도 명분을 쌓기 위한 형식적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지울 수 없는 상태다.

한편, 파병결정과 테러방지법을 연결시키는 정형근 의원 등의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 양영미 간사는 "지난번 월드컵을 명분 삼더니 이제는 파병이냐"고 되물은 뒤 "밖으로는 이라크 민중의 인권을 짓밟는 파병을 추진하고 안으로는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을 추진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배경내]

"테러방지법 반대 인권위 의견은 부당"

연합뉴스 10. 29

고영구 국가정보원장은 2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해 입법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고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정보위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이 "국정원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같은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절대반대 입장을 밝히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인권위는 이에 앞서 "현행 법과 제도로도 테러방지대책이 가능한데 대테러활동을 모호하게 정의,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법집행을 할 수 있는데다 출동한 군병력의 활동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아 국정원의 권한강화는 물론 국민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법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국회 의원 전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위는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내달 3일 오후 공청회

를 개최, 학계와 시민단체 대표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테러방지법 제추진 논란 (2003년 10월 29일 한겨례)

국회 수정안 심의.... 국정원 막강 '개악'
인권위 "국민기본권 침해 우려" 반발

국회가 연내 입법을 목표로 국가정보원이 제출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28일 시작함에 따라, 이 법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우려한 국가인권위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날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심의한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 12명과 박관용 국회의장에게 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보냈다.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수정안이 기존 법안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형식적으로는 상당 부분 축소, 조정됐지만, 내용상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악되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수정안에서 국정원의 권한이 강화된 대목을 문제삼고 있다.

애초 원안에서는 국무총리

가 의장인 국가 대테러 대책회의가 대테러활동에

대한 의견, 심의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수정안에

선 의결 권한이 삭제돼 대테러센터장인 국정원장

을 제어할 수단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또 '특정금

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국정원장을 포함시켜, 국정원장이 경제, 금융에

관한 정보까지 독점하는 길을 열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에 대해 국정원장이 법무부 장관

에게 출입국 규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제 인권기준에 맞지 않게 외국인 차별 소지가

강화됐고 -대테러 활동과 관련한 군 병력의 활동

및 업무 범위를 규정한 내용을 없애 자의적인 법

집행 소지를 남긴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이주영 인권운동사랑방 간사는 "국정원에 다른

정부 기관의 대테러 활동을 기획, 조정하고 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국정원

개혁과는 반대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등 98개 시민, 사회단체들은 지난달 22일 '테러

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을 결성해, 법 제정

반대 운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고영구 국정원장은 이날 정보위 간담회에

서 '같은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국정원의 테러방지

법에 절대 뜻을 밝히는 게 말이 되느냐'는

이윤성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매우 부당한 처

사"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국정원은 2001년 말부터 테러방지법 제정을 추

진했으나, 인권위와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 위협이 높아졌다며, 원안을 일부 수정해 다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위는 다음달 3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재진 기자 jjk@hani.co.kr

[사설] 테러방지법 안된다 (한겨례신문, 2003년 10월 30일자)

연내 입법을 목표로 국가정보원이 제출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서 인권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이에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98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을 꾸려 본격적인 법 제정 반대운동에 나섰으며, 국가인권위도 국회의장과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들에게 일일이 법 제정 반대 의견서를 보냈다.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9·11테러의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지난해 추진됐던 이 법안은 인권침해 소지가 많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지나친 권력 강화 등 술한 반인권적 내용 때문에 입법이 무산됐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 결정을 밝힌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 위협이 높아지면서 재추진 세력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테러를 방지할 법은 현행 법률로 충분하므로 법안을 새로 만들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본다. 현행 통합방위법과 형법 등이 테러방지에 관한 충분한 법적 명문 규정을 두고 있는 마당에 전제되지 않는 권력을 행사하는 국정원의 지나친 강화가 필연적으로 인권침해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 국정원이 그에 따른 수사지휘권까지 가질 경우 이미 국가보안법상 권한 외에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추가로 갖게 될 것이다.

이 법의 수정안이 원안보다 더 개악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국가인권위의 보고도 지나칠 수 없다.

원안에는 군병력의 활동 및 업무범위에 관한 자세한 제한을 두었으나 수정안은 이마저 삭제한 데다 일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조항들을 담고 있어 자의적 업무집행을 부를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테러대책기구의 권한을 문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은 치명적 문제점으로 꼽힌다. 국제법적 근거로 제시된 일부 협약들도 국내법 효력이 전혀 없는 미비준 조약에 불과하다.

[한겨례] 2003년 10월 31일

한국 귀화한 파키스탄인 "국정원서 정보원 노릇 요구" 인권위에 진정서

이라크 추가 파병을 앞두고 30대 귀화 한국인이 국정원 직원들한테서 국내 이슬람권 외국인 노동자들의 동향을 파악해 달라는 이른바 '정보원' 노릇을 요구받았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경기 안산에서 양고기 도매업을 하고 있는 귀화 한국인 자비드(39)씨는 30일 국정원 직원인 김아무개, 박아무개 씨 등이 지난 8월부터 지난 22일 까지 4차례 찾아와 "안산과 부평지역 이슬람 사원에 가서 그곳에 모인 노동자들의 동향을 알아오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양고기 도매업으로는 주변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니 노동자들이 많이 모이는 공단 근처에서 소매업을 하라는 권유도 받았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출신으로 어학연수차 입국했다가 한국

인과 결혼해 2001년 귀화한 자비드 씨는 그동안 양고기를 가공,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해왔다.

이에 대해 김씨 등은 "이라크 추가파병을 앞두고 안산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데다 파병 반대 시위도 있을 것 같아 통상적인 동향 파악에 나선 것"이라며 "한국인이 이슬람 사원에 가면 누에 바로 뛰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소장 박천웅 목사)는 이날 "국정원 직원들이 귀화 외국인에게 '정보원' 노릇을 요구하는 것 등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안산/홍용덕 기자 udhong@hani.co.kr)

<논평> 역시 무서운 국정원
인권하루소식 11. 2

감시의 명수, 국정원의 꼬리가 또 다시 잡혔다. 파키스탄 출신 귀화 한국인이 국정원으로부터 '정보원' 역할을 강요받다 이 같은 사실을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것이다. 국정원이 이슬람사원에 모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동향을 알아오라 했단다. 테러리스트를 잡아주면 집을 사주겠다고 했단다.

힘없는 사람 약점 잡아 '프락치' 삼으려 하는 국정원의 못된 버릇은 여전하다. "통상적인 동향파악이었다"고 뻔뻔스런 혀를 내두르는 것 역시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대체 국정원이 과거에 비해 무엇이 달라졌단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감시 대상 목록에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까지도 추가되었다는 점인가? 이제껏 '대공수사'로 먹고살았다면, 이제는 '대테러'란 먹이 하나를 더 찾아냈다는 점인가?

이슬람계 외국인 노동자란 이유로 테러 위험 인

물로 낙인찍고 감시대상으로 삼는 것은 극심한 인종주의가 판쳤던 나치 독일을 연상케 한다. 미국에서도 9·11 이후 아랍계 외국인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관리한다던데, 이런 것마저 미국을 쫓아 하는 건가? 이번에 덜미가 잡힌 곳은 안산과 부평이지만, 다른 곳이라고 국정원의 감시망으로부터 안전지대였을 리 없다. '대테러'를 벌미로 그들 손에 들어간 정보가 무엇이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국정원이 '해외 외국의 정보기관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국정원은 이것으로도 성이 차지 않는 모양이다. 테러방지법을 기어이 만들어 다른 행정 기관의 정보업무까지 장악하고 대테러활동 지휘하며 목소리를 키우려고 하는 걸 보니 말이다. 통신검열 칼자루 휘두르는 데 '반국가활동'이란 핑계 하나로 모자라 '테러'까지 포함시키려는 걸 보니 말이다. '테러 우려'를 벌미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규제권한까지 가지려고 하는 걸 보니 말이다. 소름이 돋는다. 역시 무서운 국정원이다.

법무부·국방부도 "테러방지법안 우려"
국회 정보위 공청회 열어…유관 정부부처내 이견 확인

인권하루소식 11. 4

현재 국정원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해 유관 정부부처 내에서 조차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테러방지 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법무부 김경수 검찰3과장은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가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테러방지법의 제정 필요성을 아랍권의 동향이나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상존하고 있는 북한의 테러 위협에서 찾아야 한다"는 정형근 의원(정보위 한나라당 간사)의 주장에 대해 김 검찰3과장은 "북한의 테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이미 마련돼 있는데 테러방지법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과잉입법이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테러위협의 환경이 미국이나 영국과는 다르고 국가보안법마저 마련돼 있는 상태에서 굳이 '북한의 테러 위협'을 내세워 테러방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인 것.

김 3과장은 또 "2조 '대테러활동'의 개념, 법안 곳곳에 등장하는 '관계기관'의 개념, 8조 '외국인'의 동향 및 테러자금 지원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에서의 '확인'의 개념 등이 불분명해 대테러기구

가 방대한 권한을 갖게 될 위험성이 있다"면서 남용의 우려가 있는 조항들에 대한 손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 3과장은 "국정원법으로 설치된 국정원 내에 독립적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대테러센터를 테러방지법을 통해 두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으며, 차라리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에서 떼어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대테러센터에 대테러활동의 기획·지도·조정' 권한을 주는 것도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참고인으로 나온 국방부 법무과장 고석 대령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의 군사작전의 효율적 수행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테러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특수부대 요청시 군통수권 체계에 혼란이 와서는 안된다"고 말해 대테러센터의 장인 국정원장에게 특수부대 출동 요청권을 부여하는 현 법안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정형근 의원과 함승희 의원(정보위 민주당 간사)은 테러방지법안에 반대의견을 밝힌 전술인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질문의 형식을 빙자한 반론'을 펴부어 빙축을 샀다. 두 의원은 특히 '법안에는 별 문제가 없으며 테러예방을 위해 정보기관인 국정원 내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 일사불란한 대테러활동의 수행을 위해 테러방지법을 별도 제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해 공청회 개최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나마 김덕규 정보위원장(열린우리당)이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폭넓게 의견을 듣고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것만이 테러방지법 제정을 우려하는 이들에게 작은 위로가 됐다.
[배경내]

한겨례 11월 1일(토)자 [왜냐면]

테러방지법은 인권에 대한 테러

2001년 11월 처음 국가정보원에 의해 제안된 테러방지법안은 9·11 테러 직후 국민 사이에 만연한, 테러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을 이용하는 한편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 대비라는 명분을 내세웠기 때문에 당시에는 일사천리로 통과될 듯이 보였다. 그러나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내부의 저항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2002년 5월을 기점으로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는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올 8월 이후 일부 내용이 수정된 채로 제안된 제2차 테러방지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이른바 제2차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서는 제1차 법안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내외

시민인권운동단체의 제정반대 의견이 이미 제시되어 있다(nopota.jinbo.net). 이에 더해 유엔 인민고등판무관실은 한국의 테러방지법이 난민 및 외국인의 지위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았다. 이 기구의 우려는 "어떠한 테러대책도 인권과 난민의 지위, 인도주의적 국제법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2002년 유엔 총회의 결의(A/RES/57/219)를 일깨워준다. 유엔 총회의 결의는 권고적 효력밖에 없으나, 유엔 안보리 결의 1373호를 이용하여 공안, 정보권력을 강화하고 있는 국가들에는 중대한 경고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또한 무엇을 테러라고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 국제사회가 여전히 합의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인권적 반테러조처만이 횡행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가 테러방지법의 제정 필요성과 관련하여 자주 끌어들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1373호는 한국을 비롯하여 각국 정부가 추진하였거나 하고 있는 '반인권적, 자유침해적 반테러 조처'에 대한 백지 입장장이 결코 아니다. 이 결의는 9·11 테러 직후 발표된 것이기는 하나, 테러리즘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지속적 노력의 연장선에 서 있고, 반테러 대책과 관련하여 현재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제시되고 있는 테러자금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아가 이 결의는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등에 가입하는 것이 유엔 회원국들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의 제정 필요성을 제시하는 정부 쪽 논리도 이제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유엔 회원국인 대한민국도 안보리 결의 1373호에 '구속되므로' 현재의 초안대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에는 결의 1373호가 여러 규모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 '국제법 및 국내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반테러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한 사실이 빠져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적으로 가능한 수단이란 국제법과 국내법(헌법을 포함)에 합치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 그리고 난민의 지위가 점차 침해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테러 방지를 위해 법적으로 가능한 조처란 결국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인정하는 조처로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통과를 공언하고 있는 현행 법안의 내용은 어떤가? 법안은 국가정보원에 대테러센터를 두어 국정원으로 하여금 대테러 업무에서의 기획, 지도 및 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그러나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지극히 모호하다)에는 평상시에도 군대를 동원할 수 있게 했다. 국회는 물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각국 비밀정보수사기관 사이의 정보교류를(말이 정보교류이자 자국민의 사적 정보를 타국에 넘겨 주는 형태가 될 것이다) 승인하는 것은 물론, 법원의 허가 없이 대통령의 승인만으로도 감청(도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다(테러행위와 무관한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안심하는 것은 물질이다). 진짜 테러 때문에 감청(도청)을 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동남아시아, 이슬람권 출신자들은 앞으로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 취급을 받게 될 공산이 크다.

‘순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켜야 할 기구를 버젓이 상급 ‘정보수사기관’으로 만들고, 계엄상황이 아닌데도 군대가 출동할 수 있게 하며, 우리나라에서 보호를 요청하는 난민을 ‘테러를 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으로 분류하여 아예 입국도 못하게 하는 법을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 반테러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국정원 개혁의 방향이 정보권한과 수사권한의 분리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허위신고자에 대한 수사권’을 국정원에 새로 부여하는 법을 새삼 만드는 일이 온당한 처사인지 묻고 싶다. 혹자는 법안 제13조가 제1차 법안에서와 달리 “허위임을 알면 서도” 테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신고 또는 유포하는 자만을 처벌하고, 그러한 자를 적발하는 수사권만을 대테러센터가 갖게 될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하나 이는 모르고 하는 소리다. 모든 나라에서 반테러법은 처벌이 아니라, 처벌을 빌미로 한 합법적 감시권한의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1만건을 조사하면 1건 정도가 실제로 형사처벌되는 것이 테러범죄의 현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던가. 그러나 테러리스트를 이길 힘은 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싸우는 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방식은 이미 자유주의적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에 다 나와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바로 이와 같은 가장 기본적 사실도 무시하는 테러방지법안의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지난 대통령선거 때부터 약속한 국가정보원 개혁부터 발벗고 나서라.

이계수/울산대 법학부 교수

“테러방지법 제정보다 국정원 개혁 우선”

(서울=연합뉴스 11. 4)
이광철기자= 국가정보원의 테러방지법 제정 추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원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며 입법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98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은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테러방지법 공청회에서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을 비대한 조직으로 만들 가능성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장유식 변호사는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을 순수 정보기관으로 바꾸려는 개혁 과제는 포기할 수 밖에 없다”며 “국정원이 갖고 있는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이라크 파병에 따른 테러 위협을 근거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하기 보다 이라크 파병을 철회하는 게 순리”라고 덧붙였다.

민변 장주영 변호사는 “정부차원에서 대테러 활동이 필요하다면 별도 대책회의를 만들 게 아니라 기존 NSC나 재난대책기구를 이용하면 된다”며 “국정원이 자체 정보 업무를 넘어 관계기관 대테러 활동을 총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권한 확대”라고 주장했다.

울산대 법학부 이계수 교수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순수’ 정보 기관을 상급 ‘정보수사기관’으로 만들고 비계엄 상황에서 군대가 출동할 수 있게 하며, 난민을 ‘테러를 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으로 분류해 입국조차 못하게 하는 법을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 반테러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보위는 국정원이 마련한 테러방지법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시민단체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날 공청회를 열었다. gcmoon@yna.co.kr (끝)

(인권하루소식 2003년 11월 5일자)

“유엔이 인권 위협하는 대테러조치 감독하라”
국제인권단체들 공동선언 채택…유엔 감독 메커니즘 설치 촉구

국제인권단체들이 최근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와 인권보장 수준의 후퇴를 제어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감독 메커니즘 설립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제법률가위원회(ICJ)와 국제앰네스티, 인권감시(HRW) 등 12개 국제인권단체들은 지난달 31일 ‘인권과 반테러에 관한 국제 감독 메커니즘의 필요성에 관한 공동 선언’을 발표하고, 유엔이 나서 인권에 관한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국가들의 행위를 감독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선언에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국가들이 국제인권법 등 국제

법적 의무에 배치되는 각종 조치들을 채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어떠한 국가도 테러행위가 가진 사악한 성격과 극도의 위험성을 국제법상의 의무 위반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들 국제인권단체들은 내년 3월과 4월에 열리는 60차 유엔인권위원회가 ‘인권과 테러와의 전쟁’ 문제에 관한 독립적 감독 메커니즘의 설립을 최우선적인 의제로 다루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세계 각국과 국제비정부기구들의 서명 참여를 열어 두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대테러활동을 빌미로 인권을 크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회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배경내]

문화일보(11.07.금)

<포럼>국정원 대테러센터 필요없다

지금 국회에서는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001년에 무산된 테러방지법의 입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지난 번에는 월드컵의 안전 개최를 내세우더니 월드컵이 무사히 끝나자 이번에는 이슬람테러 위협을 이유로 들고 있다.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테러방지법을 논의하기보다는 국정원의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도청과 정치사찰 논란이 일자 여야 대선 주자들은 한 목소리로 국정원 개혁과 통제 강화를 약속했다. 한나라당은 국정원 장의 임명에 반발하면서 해외정보처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개혁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정보기관은 다른 국가기관과는 달리 조직과 활동 내용이 비밀로 되어 있다.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통제가 매우 어렵다.

업무의 속성상 조직과 활동의 비밀성을 불가피하게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역할은 정보 수집 업무와 방첩 업무에 국한돼야 한다. 정보기관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책의 집행과 사법행정 권한의 행사는 다른 기관이 맡아야 한다. 정보기관의 직권남용 행위를 막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테러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테러의 개념이 모호하다. 국가 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테러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지른 단순한 범죄인지, 아니면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테러 행위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국가 안보나 공공의 안전을 넓게 해석하면 대테러센터, 즉 국정원의 업무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 그만큼 인권 침해의 가능성

도 커진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정보 수집에 관한 법이 아니다. 한 마디로 국정원 산하에 설치되는 대테러센터의 권한 및 활동을 규정한 법이다. 법에 따르면 대테러센터는 관계 기관의 대테러 활동을지도·조정한다. 테러 진압을 위해 특수부대의 출동을 요청하거나 금융 정보를 제공받고 테러 관련 허위신고죄에 대한 수사권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테러 정보의 수집이나 외국의 정보기관과 정보 협력을 할 수 있다. 테러에 대한 대응과 사후 수습 조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위기관리센터나 재난관리기구를 통해 할 수 있다. 정보 수집·업무를 넘어 대테러 활동을 지도하고 조정하는 대테러센터를 중복적으론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테러방지법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테러를 막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테러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그 동안 테러 대응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규제는 법무부, 테러 진압은 경찰, 테러 물품의 반입 방지 는 관세청, 항공기 테러 방지 업무는 건설교통부에서 각각 담당해 왔다. 국정원이 수집한 테러 정보를 바탕으로 이들 기관과 협력하여 테러 방지 활동을 하면 된다. 대테러센터가 이들 기관을 ‘지도’할 필요는 없다.

외국의 테러 대응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에서 강화된 정보기관의 반테러 활동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형사절차상 인권 침해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 유엔총회에서는 국가의 대테러 대책이 국제인권법과 난민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우리의 테러 대응 체계가 적절한지,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가 정당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외국의 사례를 마냥 추종할 일은 아니다.

국정원은 예전과는 달리 권한을 남용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 과거의 잇대로 현재의 국정원을 평가하지 말 것을 주문하기도 한다. 인권 침해를 일삼던 과거와 달라서야 하고, 또 달라졌을 것으로 믿고 싶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국정원을 믿어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끊임없는 견제와 비판이 있어서 가능한 일 이었다.

테러를 예방하고 막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대테러센터를 통해 국정원이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를 넘어 대테러 활동을 주도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국정원은 불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데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테러 정보 수집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테러 정보를 사전에 입수할 수 있다면 테러의 방지는 어렵지 않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개혁에 역행하는

법이므로 제정돼서는 안 된다.

장주영 / 변호사

[한겨레 여론칼럼 11월 13일] 테러방지법 관련 보도

또하나의 '국가보안법' 탄생 인권침해 우려 적극적 보도를

지난 10일 국회 정보위에 테러방지법 3차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2001년 11월 국정원이 발의하여 정부에 의해 국회 정보위에 제출되었으나, 인권시민단체의 거센 반발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 유엔과 국제 인권단체의 우려에 부닥쳐 추진이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다가 2002년 2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수정안을 냈고, 올 8월 김덕규 의원 외 5명이 2차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다시금 논란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수정안을 설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고 테러 위협을 주제로 한 세미나 등을 통해 분위기를 조장하는 한편, 국회 정보위 소속 위원들 주최로 테러방지법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2차 수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식적으로는 상당 부분 축소 조정됐지만, 내용상으로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악된 부분이 많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상당수 독소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음'으로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3일 열린 공청회에 참석한 법무부와 국방부 등 정부 안 유관 부처들마저도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두는 것' 등에 대해 우려하는 뜻을 밝혔다.

이렇듯 2차 수정안도 반대에 부딪치자 국회 정보위 소속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민주당 함승희 의원, 열린우리당 김덕규 의원의 공동발의 형식으로 3차 수정안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3차 수정안 역시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산하에 둔다는 내용은 여전하다. 국정원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또한 이 수정안은 "북한의 테러위협을 상정하지 않는 테러방지법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정형근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인 듯, 법안 수정이유에 북한을 국내외 테러위협의 선두주자로 내세우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그동안 인권단체들은 테러방지법의 인권침해 소지를 지적하며 법 제정 자체를 반대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3차 수정안은 정보위 소속 3당 의원 공동발의안이라는 점에서, 14일로 예정된 국회 정보위 심의를 통과할 가능성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려고 하

고 있다. 더구나 이 법은 그 본질상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전제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그런데도 법 적용 대상 당사자인 국민은 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지 못하다. 여기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언론의 책임이 크다 할 것이다. 대부분의 언론이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법안의 문제점, 그리고 법이 통과된 이후에 발생할 사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한겨레>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한겨레>는 10월 29일자 기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법 제정 반대의견을 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그날자 사설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안 된다'는 견해를 밝히는 데 그쳤다.

지난 8월 2차 수정안이 정보위에 상정된 이후 지금까지, 위에서 언급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물론, 테러방지법을 판단할 수 있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인색했다는 것이다.

1948년 국가보안법 제정 당시 이 법의 제정을 반대한 청현 국회의원 48명은 정치적 악용과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우려하며 폐지안을 제출했으나 결국 국가보안법은 제정되고 말았고, 애초의 우려대로 국가보안법은 인권침해의 대명사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테러방지법이 또 다른 국가보안법이라고 주장한다. 법을 만드는 것은 쉬울지 몰라도 잘못된 법을 바로잡거나 없애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한겨레>가 테러방지법의 심각성을 충실히 전달하는 책무를 다해야 하지 않을까. 채은아 민주화실천기록운동협의회 총무

[인권하루소식 2003. 11. 13]

테러방지법 '3당연합안' 국회 제출
본질적 문제점 놔둔 채 부분 맴질…인종주의적
발상 드러내

지난 10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홍준표(한나라당), 함승희(민주당), 김덕규(열린우리당) 의원이 새로운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정보위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3당연합안'은 지난 8월 국정원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민주당이 발의했던 테러방지법 수정안과 내용 면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지만 3당이 연합해 마련한 법안이어서 정보위 심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가깝게는 14일 오전 10시 정보위 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번 3당연합안에서 8월의 수정안과 달라진 점을 찾아내기란 '숨은 그림 찾기'보다 힘들다.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여전히 꾀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대테러활동'을 둘한 불명확한 개념을 삽입해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가능케 한 조항들도 버젓이 버티고 있다. 또 테러예방을 빙자하여 외국인에 대한 자의적인 감시와 출입국 규제 등을 가능케 한 조항과 시민들의 통신에 대한 자의적 감청을 가능케 한 조항들도 전혀 손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계수 교수(울산대 법학)는 "이번 법안에서도 국정원 산하의 대테러센터는 의연히 살아남아 '법률적 승인'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국정원은 국민적 개혁 요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또 "테러위협이 헌법까지 무력화시키는 마법의 주문은 아니"라면서 "테러에 대한 막연한 공포에 기반해 비밀정보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내·외국인에 대한 일상적 감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안은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번 안에서 달라진 점이라고는 △대테러센터의 권한 중 '대테러활동의 기획·지도 및 조정'에서 '지도'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시설 보호와 경비를 위해 동원된 군병력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국방부장관에게 부여하며 △테러와 관련된 혀위사설의 신고·유포 등에 관한 대테러센터 직원들의 수사권을 삭제하도록 한 것 정도에 불과하다. 그 동안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물론 정부 내에서조차 비판을 받아온 조항들을 손질한 셈이다.

그러나 이는 국회 통과를 겨냥한 '눈 가리고 아웅'식의 부분 맴질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상임활동가는 "'지도'라는 단어가 삭제되었다 해도 엄청난 정보력을 갖고 있는 '음지의 권리기관' 국정원이 다른 국가기관들을 사실상 지휘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동원된 군병력의 지휘·명령권이 국방부장관에게 있다고 해서 시민들의 일상생활 한 가운데 군부대가 드나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꼬집었다.

심지어 이번 3당연합안은 발의 이유를 "북한·이슬람 등의 국내외 테러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신체를 보호하기 위해"라고 밝혀 낡은 냉전적 인식과 인종주의적 편견마저 드러내고 있다. 이는 남북관계를 냉전시대로 회귀시키자는 것일 뿐만 아니라 12억 이슬람인들을 모두 테러위협분자로 규정하는 신인종주의적 발상이다.

이와 관련해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13일 낮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항의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배경내]

[인권하루소식 11. 14]

금물살 탄 테러방지법, 의사봉 돌진 막아라
테러방지법반대공동행동 여의도 돌며 항의…각당
당론조차 없어

국회 정보위원회(아래 정보위) 소속 민주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3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14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 또 하나의 반인권 악법이 입법 일정의 급물살을 타고 의사봉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 98개 단체들이 연대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이 물살을 되돌려 놓기 위해 13일 온종일 국회, 민주당, 한나라당을 찾아다녀며 "테러방지법 반대"를 목이 쉬도록 외쳤다.

공동행동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찾아가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의 입법에 반대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에 정녕 귀를 틀어막을 것인가"라고 강하게 항의하며 "테러방지법 폐기를 당론으로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경청하는 의원들은 보이지 않고 전경들만 이들의 목소리를 이중 삼중으로 에워쌌다. '국가의 안전'을 위해 제정한다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어이없게도 각 당은 당론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보위 의원 12명의 손에 '국가의 안전'이 맡겨져 있는 꼴이다. 게다가 정보위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과 국정원 사이에 어떤 '합의'가 오고 갔는지 국민은 알 도리가 없다. 공동행동은 이날 정보위 의원들에게 쇄기를 박아두자는 계획도 실천에 옮겼다. 특히 이 법의 제정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 정형근 의원은 반드시 만나야 할 인물. 다행히도 이들은 12명의 의원 중 그를 유일하게 대면할 수 있었다.

정 의원은 "테러방지법은 여당에서 발의했으니 거기 가서 항의하라"며 "나는 1차 법안 발의 맨 반대했던 사람"이라며 한 발 빼다. 그렇다면 2차 제정에 그렇게 적극적인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는 "이 법의 제정은 유엔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평계를 들어졌다. 사실 상당수 정보위 의원 보좌관들은 유엔의 권고를 법 제정의 정당성으로 들이댔다. "유엔 권고는 각국이 테러 위협에 적절히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지 '테러방지법 제정'을 독촉한 것은 아니"라는 한 인권활동가의 지적에 대해 정 의원은 "논리가 되는 좋은 말씀"이라는 엉뚱한 답을 내놓기도 했다. 최종적으로 그는 "(10일 3당의원이 공동 제출한) 수정안은 많이 수정돼 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 찬성"이라는 의견을 확실히 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 법에 반대해 인권사회단체들과 개인이 발표한 성명과 의견만도 24건에 달한다. 국민적 반대라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도 정보위가 테러방지법 입법에 박차를 가할지 14일 심

의 결과가 주목된다. [김정아]

우리당 "범국민정개협 결정 승복"
호주제 폐지 당론 채택

(서울=연합뉴스 11. 14) 김재현기자 = 열린우리당은 1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정치개혁 입법과 관련, 국회정치개혁특위의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각당의 안을 토대로 개혁안을 마련하면 이에 승복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김부겸(金富謙) 원내부대표는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는 국민협의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의총에서 ▲중대선거구제 ▲의원정수 299명으로 증원 ▲권역별 비례대표제 ▲여성 비례대표 50% 할당 ▲1인2표제 ▲지구당 폐지 ▲중앙당과 지구당의 후원회 폐지 ▲모든 공직선거 출마자에 대해 선거 전 일정시점부터 후원회 허용 ▲선거 공영제 ▲선거권 연령의 18세로 인하 ▲합동·정당연설회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다만 한나라당이 소선구제 당론을 고수해 내년 총선에서도 소선구제가 시행될 경우 선거구 인구상·하한선을 다른당의 '10만~30만에 10% 표준편차 허용'과 달리 11만~33만명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당은 이날 정부의 호주제 폐지법안과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담뱃값 인상 취지엔 공감하되 인상시기는 경제 회복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 우리당은 또 국회내 신행정수도특위 구성과 관련, 충청권 의원 전원과 각당에서 추천하는 의원들로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비충청권이 맡는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jahn@yna.co.kr

테러방지법 정보위 통과(종합)
계급정년 단축 국정원직원법도 처리

(서울=연합뉴스 11. 14) 민영규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테러방지법안 일부를 수정한 위원회 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테러방지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될 것으로 보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은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국가정보원장과 각 부처 장관등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대테러

대책회의를 설치하고 국정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신설, 테러정보 수집 및 기획, 조정업무를 맡도록 했다.

법안은 또 대테러센터가 테러사건 발생시 특수부대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대테러 대책회의 의장은 군병력의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했으나 출동한 군병력은 국방부장관의 지휘·명령에 따라 순수하게 경비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이어 대테러센터가 테러단체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의 동향파악과 자금지원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테러 가능성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규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보위는 이와 함께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법정진술을 위해 국정원장에게 허가를 요청할 경우 국정원장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신청된 직원이 허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또 국정원 1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폐지하고 2~4급 직원은 정년을 2년 씩 단축하도록 했다. youngkyu@yna.co.kr

[참세상 방송국 11. 14]

인권활동가들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국회 기습시위
국회 정보위 수정안 심의 앞서 시위
인권활동가들, 국정원과 법안제출 3당 규탄

[4신: 오후 7시] 연행된 인권활동가들 귀가조치…'의원들이 법안 내용 모르고 있다"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안이 국회 정보위에서 전격 통과된 가운데, 이날(14일) 오후 4시 민변·새사회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권실천시민연대 등 소속 활동가 10여명은 서울 여의도 국회 부근 국민은행 앞에서 이에 항의하는 선전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또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를 외치며 기습시위를 벌이다 강제연행된 인권활동가 9명에 대해 즉각 석방할 것을 사법당국에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정치권이 이 법안으로) 테러를 방지하고 국가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정원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각 당(한나라·민주·열린우리

당)의 당론도 없이 정보위원 12명의 손에 맡겨져 진행되면서, 다른 의원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아 상임활동가는 2001년 미국의 9·11테러사건 이후 이와 비슷한 법안이 통과된 사실을 한 예로 들었다.

"9·11테러 이후 미국은 애국자법(페트리어트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미 국회에서는 반대의견이 제출됐음에도,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9·11 테러 상황에 편승해, 인권침해 요소가 높고 정보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이 전격 통과됐다. 마찬가지다. 의원들이 테러방지법안의 내용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새사회연대 신수경 총무부장은 이 법안이 정보위에서 통과된 데에 한마디로 "황당하다"고 잘라 말했다. 신 총무부장은 "(정부가) 지난해 월드컵을 앞두고 테러를 우려해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다, 결국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며, 결과적으로 당시 테러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총무부장은 또 "이 법안이 테러와 아무 상관 없는 북한 등을 테러 위협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수구·보수집단이 자신들의 인식에 맞춰 법을 제정하려 한다."며 "2001년부터 2년 동안 법 제정을 막아왔다. 국회가 이 법의 위험성을 모르고 있지만, 아직 법을 제정하기까지 절차가 남아있어 꼭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3당연합안'으로 국회 정보위에 제출된 이 법안은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심의조차 거치지 않고,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별다른 논의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이후 법안은 법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오후 4시 반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선전활동이 진행되는 도중,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기습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인권활동가 9명이 조사를 마치고 귀가조치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박종모 기자]

[3신: 오후 3시] 국회 정보위 일부조항 삭제 법안 통과…공동행동, "보다 강도높은 대응 나설 것"

테러방지법안이 국회 정보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운동사랑방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인권침해 조항은 삭제됐지만, 국정원의 '대테러센터'를 관장하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된 채 가결됐다.

한편 이날 오전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 등 인권활동가 9명은 현재 영등포경찰서(4명)와 방배경찰서(5명)에 각각 분산 수용돼, 조사를 받고 있다.

영등포경찰서에는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손상열(평화인권연대)·민경우(통일연대) 씨 등이 조사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한 명은 단식과 함께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또 영등포경찰서에는 김상영(국제민주연대)·오영경(새사회연대)·배경내·김주영(인권운동사랑방)·박성희(미화인) 씨 등이 조사를 받고 있다.

박성희 씨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날 테러방지법안 국회 정보위 통과와 관련 "99개 단체가 공동행동을 꾸려 지난 2년간 걸쳐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국회가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끝까지 이 법의 통과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생각하기 보다, 국정원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씨는 "(국회 정보위원회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인권' 의원들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며 "이후 법사위 통과 저지를 위해 지금보다 강도 높은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테러방지법안 국회 정보위 통과가 알려지자, 공동행동 구성 단체들은 이날 오후 3시 여의도 국회 부근 국민은행 앞에서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강화·대테러센터 설치법·테러방지법 가결'에 대한 긴급 규탄집회를 열 예정이다. [박종모 기자]

[2신: 오후 2시] '음지의 권리기관' 국정원에 막강한 권한 부여

한나라·민주·열린우리당 '3당연합안'으로 지난 1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 수정안과 관련, 인권운동사랑방·민변·평화인권연대 등 98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앞서 13일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이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인권을 심각히 위협한다"며 "(국회 정보위) 심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이 법안이 국정원 내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해, 관계기관의 대테러 활동을 기획·조정하며 각종 정보업무를 총괄하고, 특수부대의 출동 요청까지 할 수 있는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데 크게 우려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테러에 대한 막연한 공포에 기반해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내외국인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려 한다."며 "이 법안은 법률로서 아예 대테러센터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국정원의 근본적인 개혁 자체를 봉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테러활동을 기획·조정한다는 명분으로 '음지의 권리기관' 국정원이 일반 행정부처의 업무에 개입하고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고, 테러방지를 빌미로 한 민간치안 영역에 군 병력이 동원되는

등 현법적 차원의 논의 없이 한국군의 임무와 역할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공동행동은 경찰·검찰·법무부·국정원 등 다양한 국가기구와 통합방위법 및 각종 형사법 등의 법률을 통해, 이미 테러 행위를 예방하고 진압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법안이 북한과 이슬람을 '국내외 테러 위협'으로 명기하고 있어, 공동행동은 "(이는) 이 법안의 추진세력들이 낡은 냉전적 사고와 인종주의적 인식에 사로 잡혀 있음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종모 기자]

[1신: 오전 11시] 국회 정보위 수정안 심의 앞서 기습시위
인권활동가들, 국정원과 법안제출 3당 규탄

오늘(14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회 정보위원회의 테러방지법 수정안 심의에 앞서, 인권활동가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시도 중단"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날 오전 9시 50분경 인권운동사랑방, 새사회연대, 민가협 등 소속 인권활동가 9명은 "밖으로는 폐병추진 안으로는 테러방지법 제정시도"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이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회 본청 앞에서 5분여 동안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 기습적으로 모여 현수막을 펼치고 구호를 외치다 출동한 국회의원들에게 모두 연행. 오전 10시 반 현재 영등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인권활동가들은 테러방지법 제정을 시도하는 국가정보원과 한나라(홍준표·민주(함승희)·열린우리당(김덕규) 등 3당 공동명의로 3차수정안을 제출한 정보위 소속 의원들을 규탄하고, 테러방지법 제정시도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이날 기습시위를 벌였다. [김용욱 기자]

< 정보위 테러방지법 처리 안팎 >

(서울=연합뉴스 11. 14) 민영규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가 14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테러방지법안은 지난 2001년말 정부가 제출했던 원안가운데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던 조항을 상당부분 삭제하거나 수정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민간 인권단체들이 여전히 인권침해 요소가 있음을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위는 장기계류중이던 이 법안을 공식회의 자리에서 심의하지 않고 국가정보원과 정보위간 조율로 정보위 대안을 만들고, 지

난 3일 공청회 개최에 이어 3당 간 사간 협의로 사전조율한 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별다른 논의없이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심의를 해봐야 인권단체들의 비판론만 부각시킬 뿐이라는 계산에 따라 이날 전격 처리한 게 아니라는 분석이다. 이날 정보위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안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했던 테러의 정의를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등 테러관련 국제협약이 규정한 범죄행위'로 한정하고, 테러단체도 유엔이 지정한 단체나 이와 연계된 국내외 결사 및 집단으로 제한하는 한편 테러자금을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이 정한 자금으로 구체화했다.

법안은 또 대테러활동의 기획, 지도, 조정이라는 대테러센터의 주요업무 중 '지도' 조항을 삭제하고, 테러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강제 출국 조치도 당초 대테러센터가 직접 할 수 있던 것을 법무부 장관에 요청도록 바꾸는 등, 대테러센터가 국정원장 산하에 있는 관계로 인해 국정원의 권력남용 소지가 있던 것을 개선했다고 정보위원회들은 설명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대테러센터에 부여키로 했던 허위신고에 대한 수사권을 폐지했으며, 테러단체 구성 및 테러자금 조달 등의 처벌조항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삭제했고,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특례조항도 폐기했다.

법안은 특히 테러사건 발생시 출동하는 군병력에게 부여했던 불심검문과 범죄예방 등 사법경찰권도 폐지하고 국방부 장관의 지휘·명령에 따라 시설보호와 경비업무만 맡도록 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인권기구와 단체들은 "현행 법과 제도로도 테러방지 대책이 가능한데 군병력 출동요청 등 위험소지가 있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정원의 권한만 강화시켜 줄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테러방지법 제정이 국정원의 권한남용으로 이어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덕규(金德圭·열린우리당) 위원장과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박현기(朴憲基) 이윤성(李允盛) 홍준표(洪準杓),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김옥斗(金玉斗), 열린우리당 천용택(千容宅) 의원이 참석했다. youngkyu@yna.co.kr

[한겨레 11. 14] 테러방지법 국회정보위 통과

대테러 활동을 위해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강화하

는 내용의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14일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연내에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나,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인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민주당·열린우리당이 공동 발의해 정보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수정안은 국정원장 아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 이 대테러센터가 관계기관의 대테러 활동을 기획·조정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에 큰 권한을 부여했다. 또 대테러센터가 특수부대의 출동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정안은 다만 국정원이 제출한 테러방지법 초안이 테러사건 발생 때 지원되는 군병력에게 부여한 경비경찰권을 빼고 시설보호 및 경비업무만 담당하도록 했다. 또 군병력 지원 절차도 대통령이 결정하되,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만약 국회가 요청하면 즉시 철회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테러의 개념을 '국제적으로 공인된 테러관련 국제협약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로 제한하고, 테러단체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지목하는 단체 또는 이와 연계된 단체'로 한정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테러방지법이 북한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어 남북화해 정신에 역행할 뿐 아니라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참여연대와 인권운동사랑방 등 9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어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테러방지법은 폐기돼야 한다"며, 반대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인권운동사랑방 간사는 "수정법안이 애초 원안보다는 나아졌다지만, 국정원 아래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국정원의 조직을 키우고 인권 침해 가능성을 높인다는 본질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민·인권단체 활동가 10여명은 이날 오전 정보위 회의에 맞춰 국회 앞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오마이 뉴스 11. 14]

'테러방지법 처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성명 통해 폐기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인권·시민·사회단체 98개가 참여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이하 공동연대)은 14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테러방지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동행동은 성명에서 "테러방지법은 명분만 테러방지법이지 기본적으로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법"이라면서 "국회 정보위의 처리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회는 입법 제정 읍모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각 당은 국가보안법처럼 한번 만들면 사라지지 않는 기관을 공개적인 논의조차 해본 적이 없이 3인(김덕규, 함승희, 홍준표 의원)의 의원들을 내세워 졸속으로 처리했다"며 "이 법안은 반민주적이고 퇴행적인 밀실야합의 극치를 이루는 법"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설사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더라도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는 것이 우리 법체계의 기본"이라며 "대테러센터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면서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것 자체가 졸속일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읍모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특히 "이 법 처리에 앞장서거나 방조한 일부 의원들의 반인권적, 반역사적, 반민주적인 행태는 역사적 반역행위"라고 규정한 뒤 "낙선운동 등 국민적인 심판을 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더 나아가 "우리 단체는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제2의 민주화 투쟁 시기에 걸맞는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단체는 13일에도 성명을 통해 "우리들을 공포스럽게 하는 것은 테러가 아니라 테러방지법에 집착하는 국가정보원"이라며 "지금도 늦지 않은 만큼 국회 정보위는 테러방지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었다. (신종철 기자)

[11. 15 경향신문]

테러방지법 '또 다른 국가보안법' 공방

테러방지법안이 14일 국회 정보위를 통과했지만 인권·시민단체들이 '또 하나의 국가보안법'으로 규정해 철회투쟁을 벌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 제출과정에서 논란이 인 것처럼 2라운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과=테러방지법안은 9·11 테러 이후 2001년 1월 국정원 발의로 국회 정보위에 제출됐으나 인권·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추진이 중단됐다. 그러나 2002년 2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등이 새로운 수정안을 제출한 데 이어 8월 다시 2차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반발이 계속됐다.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2차 수정안에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함승희, 열린우리당 김덕규 의원 등은 공동발의 형식으로 3차 수정안을 제출한 끝에 이날 만장일치로 정보위를 통과했다.

국가정보원측은 "그동안 문제가 됐던 인권침해 조항 및 위헌적 요소를 상당부분 삭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 및 쟁점=이 법안은 현재 군, 경찰, 국정원으로 분산된 대테러 업무를 '대테러센터'로 집중시킴으로써 새로운 국가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장 산하에 테러센터를 두어 국방부, 행자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의 대테러 업무를 기획·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단체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외국인의 출·입국을 규제하고 국가 중요 시설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에게 군병력 지원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당초 대테러센터에 수사 및 처벌 권한까지 부여했으나 이번 수정안에서는 테러 예방·방지업무로 기능을 축소시키고 처벌조항도 삭제했다.

유사시 군병력 지원요청도 위헌 시비가 일자 경찰권 부여조항을 삭제하고 시설보안 및 경비업무만 수행하도록 했다.

홍준표 의원은 "원래 국정원법에 다 있던 조항들을 테러방지법으로 따로 떼냈다고 보면 된다"며 "당초 27개 조항 중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13개 조항은 삭제하고 14개만 통과시켰다"고 본회의 통과를 낙관했다.

◇시민단체 반발 및 전망=인권·시민단체들은 국가정보원이 대테러 업무를 빌미로 전국민을 감시·통제의 대상으로 몰아넣을 우려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이 '상급 정보수사기관'으로 변질될 우려가 강하다는 것이다.

특히 계엄상황이 아닌데도 군대 동원이 가능하고 부칙조항에 법원의 허가없이 대통령 승인만으로 감청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시킨 것도 기본권 침해 소지가 강하다고 보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상임활동가인 박래군씨는 "애매모호한 '테러'라는 개념을 이용해 국정원이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어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9, 20일 법사위 심의와 21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논란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강진구·이주영기자 kangjk@kyunghyang.com)

문화일보 11월 15일자 사설

국정원, 왜 대테러 주축 돼야하나

국회 정보위가 14일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의결,

내주 본회의로 넘기기로 했다. 국가정보원이 2001년 11월 12일 입법예고해 보름 뒤 국회에 제출한지 2년 만이다. 입법추진 명분은 군·검·경·국정원으로 나뉜 대(對)테러 업무를 국정원장 아래 대테러센터로 수렴, 효율적으로 대처하자는 취지다.

대테러 업무는 미국의 2년전 9·11 피습 이후 세계질서를 변화시키는 정책이 될 정도로 국가안보 개념의 한 핵(核)임에 틀림없다. 우리 역시 테러 위협·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가역량을 유기화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문제는 법안이 테러유사시 국민기본권을 유보시킬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으로 설정해왔다는 점이다. 우리는 입법예고 당시 국정원이 테러정보 수집·지원을 넘어 전면에 나설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간 원안이 수차례 수정돼 국정원 기능을 다소 연성화하긴 했다. 하지만 법무·국방·행자부 관련업무를 사실상 통합하는 컨트롤타워의 본질은 그대로다. 우리가 국정원 비대화에 반대하는 국가인권위 10·24 결정과 시민단체 주장에 공감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현행 국정원법 제3조는 테러정보 수집·작성·배포를 소관업무로 정하고 있다. 이 이상 더 나서게 하면 국정원이 이미 적잖이 멀어진 정보기관 본연의 모습에서 더 멀어져, 전국민이 그 감시아래 놓일 정보·수사기관으로 부활할 것이다. "당초 27개 조항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13개 조항을 삭제했다"는 게 정보위 설명이다. 절반가까이 들어내야 했다면 법안 전반의 적실성을 의심해야 옳다. 국회는 전면 재고해야 한다.

[문화 11.15] '테러방지 법안' 진통 예고 (국정원 대테러센터 기능 대폭강화)

국회 정보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001년 11월 정부가 제출한 테러방지법안을 일부 수정,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각 당은 대(對)테러 활동을 위해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국가정보원장과 각 부처 장관 등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 대테러 대책회의'를 설치하는 한편, 국정원장 밑에는 대테러센터를 두도록 했다. 테러 정보수집 및 기획, 조정업무를 맡는 대테러센터는 테러 발생시 특수부대 출동을 요청할 수 있고 국가 대테러 대책회의 의장은 군 병력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대테러센터가 테러단체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동향 파악과 자금지원 여부를 확인한 뒤 법무부 장관

에게 출입국 규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 가운데 다소 모호했던 테러의 개념을 '국제적으로 공인된 테러관련 국제협약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로 제한했고, 국정원의 권한남용 소지도 대테러센터의 기능 축소를 통해 인권침해 논란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테러방지법이 국가보안법의 경우처럼 오·남용의 소지가 있는데다 충분한 공론화 절차 없이 국회가 법안 통과를 강행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60여개 단체로 구성된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은 항의시위는 물론, 관련 의원들의 낙선 운동까지 거론하고 있어 논란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강연곤기자 kyg@

[인권하루소식 11. 15]

제2의 국가보안법 탄생 초읽기

테러방지법안, 국회정보위 만장 일치로 통과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며 인권사회단체들의 강력히 반대해온 테러방지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아래 정보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정보위는 14일 오전 10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0일 홍준표(한나라당), 함승희(민주당), 김덕규(열린우리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른바 '3당연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보위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오직 테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의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대로 법률이 제정되면 국가정보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대테러활동의 기획 및 조정"(제4조) 등을 담당하도록 해 국정원에게 날개를 달아주게 된다. 또 제안이유에서 북한과 이슬람을 테러위협세력으로 거론하면서 테러단체를 "UN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 및 이 단체와 연계된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제2조)이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규정, 국내 사회단체들마저도 국정원의 먹이감이 될 수 있다. 게다가 '테러'의 개념도 여전히 모호하다.

또 법안은 대테러센터에서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그 소재지, 국내 체류 동향 및 테러자금 지원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제8조1항)할 수 있도록 한다. '사실확인'을 한다는 구실로 국정원이 수사까지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외국인은 잠재적인 '테러용의자'로 취급

받는다. 게다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상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조건인 "반국가활동"에 "테러"(부칙 제2조3항)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추가, 시민들에 대한 자의적인 감정의 길을 열어놓았다.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상임활동가는 "정보위가 국정원의 후견인이라는 게 분명히 드러났다"며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이번 법안 통과는 국정원 개혁과도 상반된다. 이계수 교수(울산대 법학)는 "군사정권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국정원의 제도적 개혁은 국회에 정보위를 설치하는 것이 고작이었다"며 "93년 여야합의로 박탈됐던 수사권이 97년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로 회복되는 등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위 국회의원들은 국정원에 대한 문민적 통제를 스스로 포기한 셈"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정보위 통과에 앞서 이날 오전 9시 50분경 평화인권연대 손상열 활동가 등 인권 사회단체 활동가 9명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정보위 법안 상정 소식을 듣고 긴급히 모인 이들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테러방지법 제정시도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다 국회경비원들에 의해 전원 연행됐다. 영등포서와방배서로 나뉘어 조사 받은 연행자들은 이날 오후 늦게 모두 귀가조치 됐다. [강성준]

[한국일보] "국정원내 대테러센터 설치"
(2003.11.14)
테러방지법 정보위 통과

국회 정보위는 14일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 대(對)테러 대책회의'를 두고, 국가정보원에 '대 테러센터'를 설치해 테러정보 수집 및 기획·조정을 맡도록 하는 내용의 테러 방지법을 여야 만장 일치로 통과시켰다.

정보위는 "정부안 가운데 시민단체 등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조항들을 상당 부분 수정한 만큼 올해 안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을 발효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이날도 국정원 권한 비대 및 인권 침해 가능성 등을 들어 법 통과 저지 방침을 확인했고, 일부 정부 부처도 대테러센터의 국정원 설치에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 및 본회의 심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법안은 테러를 '국제협약에서 범죄로 규정하는 행위'로, 테러 단체를 'UN에서 지정한 단체'로 한정했다.

법안은 또 테러사건이 발생하면 대테러센터가 특수부대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대테러대책회의 의장(국무총리)은 군 병력의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했으나 출동한 군 병력은 국방부장관의 지휘·명령에 따라 순수하게 경비 업무만 수행하도록 했다.

법안은 대테러센터가 테러 관련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의 출입국 규제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허위 신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보위는 정부안 중 '국정원의 권한 남용 가능성' 논란을 불러왔던 대테러센터의 다른 부처 지도 기능 대테러센터 소속 공무원의 수사권 보유 이중 처벌 조항 등은 삭제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테러방지법 처리에 반대하는 기습 시위를 벌이는 등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자기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고 "법 제정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 등 일부 관련 부처도 국정원 내에 대테러 센터를 설치하는 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범기영 기자 bum7102@hk.co.kr

[오마이뉴스 기고 11. 14]

테러보다 테러방지법이 더 무섭다
테러방지법안 국회 정보위 통과에 부쳐

이주영

"반인권악법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한다." 14일 아침 국회의사당 앞에서 인권활동가들은 목이 터져라 외쳤다. 목에 피켓을 걸고, 손은 펠침 막을 부여잡고,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 국회 경비대가 달려왔고, 우리는 경찰서로 실려갔다. 끌려 나오게 되리라 예상하면서도, 우리로서는 그 렇게라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장 14일 오전에 국회 정보위원회가 테러방지법안을 논의하게 되는데,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마지막 행동까지 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그러나 기어이 정보위원회는 만장일치로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합승희, 열린우리당 김덕규 의원이 공동 발의한 테러방지법안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말았다. 매일 끊이지 않는 정치비리와 싸울질로 국회를 진흙탕으로 만드는 그들이 테러방지법안 제정에는 의기투합을 했다는 사실이 더욱 큰 절망감을 안겨준다.

국가정보원이나 정보위 소속 의원들은 "그동안

문제가 됐던 인권침해 조항들을 모두 제거했다"고 말하지만 그건 사실과 다르다. 테러에 대한 막연한 공포에 기반해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내·외국인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한다는 본질적인 문제점은 수정안에서도 변함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2001년 국정원 주도로 처음 테러방지법안이 발의된 이후 지금까지 몇 차례 수정안이 나왔지만, 끄떡하지 않는 것은 국정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한다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법은 국정원 산하 대테러센터 설치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는 말이다.

현재도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따라 대테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왜 굳이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통해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일까? 국정원이 새로운 법률을 통해 하나의 조직을 보장 받음으로써 정보기관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사전에 봉쇄하고자 한다는 것이 이 질문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판단이다.

대테러센터는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을 기획·조정'하고 각종 정보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로써 국민의 감시로부터 벗어나 비밀주의에 따라 움직이는 '음지의 권리기관', 국정원이 '테러방지'를 빌미로 일반 국가기관의 행정에까지 개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대테러센터의 장은 특수부대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도 갖게 된다. 인권침해 조항들을 모두 제거했다는 게 이러한 모습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 우려'를 이유로 외국인에 대해 정보 수집을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출입국 규제를 요청할 수 있다. 말이 그럴듯하게 '사실관계 확인'이지. 그것은 감시와 통제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감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진짜 '테러리스트'들만이 아니라 평범한 외국인노동자들인 것이다. 최근 국정원이 파키스탄 출신 귀화 한국인에게 이슬람 사원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동향파악을 요구했던 것만 봐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다. 국정원은 그 사안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정보활동'이라고 말을 했었다.

출입국 규제 요청권한도 문제다. '테러혐의'를 남용해 외국인을 강제 추방하거나 국내에 못 들어오게 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심화될 소지가 큰 것이다. 미국의 예를 보면, 특정 민족, 인종, 공동체가 정보 수사기관들의 감시의 표적이 되면서 강제추방, 입국 제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는 너무나 심각한 지경이다.

감청권한도 강화된다. 법안에 따르면, 통신비밀보호법 상에서 국정원장이 통신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에 지금의 '반국가활동'에다 '테러'가 추가되는 것이다.

군 병력이 동원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그대로다. 국정원이나 정보위 소속 의원들은 지원된 군 병력이 시설 보안 및 경비업무만 수행하기 때문

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상상해보자. 계엄도 아닌 상황에서, 청와대나 국회나 무역센터 주위를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광경을.

국제사회에서도 테러에 대한 정의가 합의되지 않았을 만큼 테러의 개념이 모호한 상황에서, 테러 대응을 빌미로 권한을 남용하고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는 너무나 크다. 더군다나, 이번 수정안의 수정이유에서 북한과 이슬람을 국내외 테러위협으로 명기했다는 점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부추긴다.

북한을 '악의 축', '테러지원국'으로 분류하는 미국에 의해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안의 수정 이유에서 테러와 북한을 연계 짓는 것은 그 자체로 너무나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다. 이슬람을 명기한 것도 신인종주의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미국에서도 9·11 이후 아랍계 외국인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마저 미국을 쫓아 하는 것인가? 이러한 인식이 국정원이 중심이 된 대테러활동에 반영된다고 할 때,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와 자유의 축소는 물론이고 한반도의 평화마저도 '테러방지', '국가안보'라는 이름 하에 도리어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이미 반테러법제가 만들어진 나라들의 경우에도 '반테러'가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어, 유엔 내 인권전문가들과 국제법률가위원회 등 국제인권단체들은 대테러조치라는 이름 하에 인권에 관한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국가들의 행위를 감독할 것을 유엔에 촉구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국가보안법 하에서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유린하는 야만이 50년 넘게 지속돼 왔는데, 테러방지법이라는 또 다른 산을 만나게 된 셈이다.

작년 무산됐던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가 다시 확인된 지난 9월 이후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고 의견서를 보내고, 공청회에 참석해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하는 등 테러방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 온 힘을 쏟아 왔다.

그러나 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한 이 때, 우리의 힘이 너무 미약함을 새삼 다시 느낀다. 또한 국정원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국회 정보위원회가 사실상 국정원의 기능과 권한을 키워주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임을 다시금 절망스럽게 확인하게 된다.

아직 법안의 최종 통과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라는 절차가 남아 있다. 한번 악법이 만들 어지면 그리고 그 법에 의해 이익을 얻는 권리집단이 있다면, 그 법을 없애기는 정말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존재를 통해 분명히 알고 있다. 또 하나의 악법의 탄생,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막는 일이 너무나 절실한 이유이다.

[한겨레 사설 2003. 11. 17]

'또다른 보안법'을 만들 셈인가

국회 정보위원회가 '테러방지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문제의 법안은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합승희, 열린우리당 김덕규 의원 등 3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수정안'이기에 본회의까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정보위는 비판여론이 거세자 "문제 조항은 대부분 수정 내지 삭제했다"며 "오히려 공세로 나섰지만, 이는 '눈가리고 아웅 격'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에 '대테러센터'를 신설해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을 기획 및 조정'하는 법안의 뼈대는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특수부대 출동까지 요청할 수 있어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를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를테면 '테러단체'를 '유엔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 및 이 단체와 연계된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국정원의 '해석'에 따라서는 국내 사회단체들까지 언제든지 '통제'할 수 있다.

법안의 또다른 문제점은 '제안 이유'에서 드러난다. 공동발의안을 제안한 이유로 '북한과 이슬람의 테러위협 세력'을 직접 거론함으로써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 공연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이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남북관계에 역행하는 냉전사고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인 동시에 미국과 갈등관계인 이슬람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적대시하는 비자주적 시각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개탄스러운 일이다. 더러는 이라크 사태로 테러 위협을 거론하지만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다. 이미 테러에 대한 입법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거니와, 테러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테러의 '명분'을 줄 추가파병 따위를 결정하지 않는 것이 옳은 길이다.

임기말인 16대 국회가 '또다른 국가보안법'을 강행처리한다면, 영원히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특히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당론을 분명하게 밝혀 공당으로서 정직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한겨레 11. 18]

테러방지법안 국정원 초법 권리 우려

테러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안이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데 이어 19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원내 주요 정당들은 대체로 이 법안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인권 침해 가능성을 법안 심의과정에서 반영해 수정했다는 것이다. 국회 정보위를 통과한 법안도 한나라당·민주당·열린우리당 공동 발의로 돼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들은 이 법안이 공안기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시대착오'적인 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가협·새사회연대·인권운동사랑방·참여연대 등 98개 인권·시민단체로 구성된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17일 오후 테러방지법안을 당론으로 찬성한 열린우리당을 항의 방문한 데 이어, 20일에는 국회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입법저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인권단체들은 정보위를 통과한 수정안이 △테러의 개념 한정 △허위 신고에 대한 대테러센터의 수사권 폐지 △대테러센터의 활동 중 '지도' 조항 삭제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특례조항 폐기 등으로 부분적으로 정부안보다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국정원의 기능을 확대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조국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서울대 법대 교수)은 "국제협약상 범죄는 테러방지법이 없더라도 현행의 형법이나 특별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며 "'테러'라는 범죄규정이나 대테러센터 같은 기구를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대테러센터를 통해 정부의 다른 행정기관 및 민간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국정원은 테러방지 활동을 명분으로 다른 국가기관들의 기능에 대해 직접 기획·조정할 수 있는데다, 계엄에 의하지 않고도 군 특수부대를 치안유지 목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예컨대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대테러센터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청와대나 무역센터·야구장 등을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군 병력이 경비하는 상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과거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가 보안 업무에 대한 조정 권한을 빌미로 각 부처나 기관을 통제했던 것과 비슷한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게 된다.

이밖에 대통령의 승인만으로 국정원이 통신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에 '테러'를 포함시킴으로써 무분별한 감청의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조국 교수는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통해 조직·예산의 축소 움직임을 미리 봉쇄하고 미래의 조직확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연합뉴스 2003. 11. 19]

"알 카에다 참입 사실아니다"(종합)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 최기문(崔基文) 경찰청장은 19일 알 카에다 요원의 올초 한국 참입설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국회 예결위 답변에서 '알카에다 요원이 올초 한국에 참입한 것이 맞느냐'는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하고 테러위협 대책에 대해 "가능성에 대비해 활동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 당국자도 "군산항을 통해 알 카에다 요원이 참입한다는 첨보를 입수하고 정밀한 조사활동을 펼쳤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한 국에 침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철저한 대비태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oman@yna.co.kr

[연합뉴스 2003. 11. 19]

법사위 테러방지법 찬반 논란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 국회 법사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위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소속 하에 두는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국정원은 정보기관으로 정보수집활동을 열심히 해야지 행정권의 집행에 해당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며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소속하에 두다는 것은 인권침해나 권력남용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대테러센터의 권한과 관련, 국방장관이 특수부대를 지정,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필요한 경우 국정원 소속하의 대테러센터장이 특수부대 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원희룡(元喜龍) 의원도 "국정원이 다른 기관들에 대해 기획·조정하는 대테러센터가 필요한지 의문이다"며 "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지난 2001년 12월 통합방위법이 제정돼 통합방위본부가 구성·운영됨으로써 모든 국가방위요소가 총동원체계로 돼있는데 법사위에서 따로 테러방지법을 놓고 논란을 벌일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가뜩이나 높아진 테러의 준동의 표적에서 한국이 자유롭지 않고, 테러 가능성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정원이 기획조정을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지지입장을 표시했다.

이처럼 찬반 논란이 맞서자 김기춘(金基春) 법사

위원장은 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겨 심도있는 심의를 하도록 했다. shchon@yna.co.kr

[프레시안 2003. 11. 19]

"박정희-전두환 시절로 돌아가고 싶나"
제2의 국보법 '테러방지법' 입법 초읽기. 시민단체 반발

시민단체들로부터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 불리우는 테러방지법의 입법화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지난 10일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함승희, 열린우리당 김덕규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은 14일 만장일치로 국회정보위를 통과, 법사위 논의를 남겨두고 있다. 지난 2001년 11월 12일 국가정보위원회(이하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입법 예고가 나온 뒤로 시민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를 경고하며 2년여간 끊임없는 입법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그럼에도 지난 8월 18일 국회정보위 소속 김덕규 위원장은 문제가 되었던 조항을 삭제하거나 일부 수정해서 연내에 입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과 국회정보위 소속 의원들은 수정된 법안은 애초의 원안에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대부분 삭제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조항, 국정원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수정법안이 과연 인권침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반전평화단체도 테러단체"

법안에서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테러'와 '테러단체'라는 개념이다.

법안은 "제2조 1. '테러'라 함은 다음 각 항목의 국제협약에서 범죄로 규정하는 행위로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테러단체'라 함은 UN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 및 이 단체와 연계된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제2조 1항의 '테러'를 '9개의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기존 국제법상의 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테러'를 특정하지 못한 채, 국제법상에 특별히 규제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테러'라는 개념이 여전히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대테러활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다.

2조 2항의 '테러 단체' 규정도 애매하다. '유엔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확정될 수 있으나, '연계된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의 규정은 모호하여 악용될 소지가 농후하다.

서울대 조국 교수(법학과)는 "'연계'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반미 이슬람 단체와 연락을 하였거나, 직간접적으로 공조를 맺고 활동하는 국내의 반전평화단체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며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될 만한 강령, 규약, 활동이 없으나 반전평화운동을 전개하는 일체의 단체가 '테러단체'로 낙인찍힐 위험을 안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정원 권한 대폭강화,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가"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국정원의 기능이 대폭 강화될 테러방지 기구설립에 관한 규정이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조 1. 대테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여 국가대테러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4조 1.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여 대테러센터를 둔다.

2. 대테러센터는 국가정보원 직원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그 조직 및 정원은 대책회의 의장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미리 당해 파견공무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대테러센터의 조직 및 정원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특수부대의 출동요청) 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부대의 출동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1. 대책회의 의장은 경찰만으로는 국가 중요 시설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은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군병력 또는 항토예비군(이하 "군병력 등"이라 한다)의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군병력 등은 국방부장관의 지휘명령에 따라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업무를 수행한다."

법안 제4조에는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에 두고, 그 조직을 국정원장이 정하며 대테러센터의 조직 및 정원을 비공개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테러 센터가 수행하게 될 일은 ▲테러정후의 탐지 및 경보 ▲테러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 및 작성 ▲대테러활동의 기획 및 조정 등이다. 또한 제11조에서는 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가 발생한 경우 특수부대의 출동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았다.

법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대테러센터는 출입국 규제 요청권이나, 감청권한, 군의 특수부대 요청권 등을 행사하게 된다. 이럴 경우 국내의 반전 평화단체의 활동에 대한 제약은 물론, 수많은 외국인과 무슬림, 나아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또 국정원이 다른 행정기관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천정배, "국정원을 안기부나 중정으로 회구시키려 하나"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은 19일 "과거 안기부의 권한도 명목상은 기획, 조정권이었다"이라며,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켜 현 국정원을 인권유린의 대명사였던 군사독재 시절의 국가안전 기획부나, 중앙정보부로 회귀시키려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은 엄밀히 말해 헌법에 규정된 기관도 아닌데, 집행권을 주는 것은 헌법질서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행정 각부의 장관에게 행정권을 책임지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학 교수들도 성명을 내고 "테러방지대책 회의 의장의 건의를 거쳐 대통령이 군병력을 동원하였지만, 동원된 군병력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명령에 따르고, 군병력이 동원된 국가중요시설에는 청와대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이 경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시절처럼 30경비단이 청와대를 경호하는 사태가 법적으로 다시 가능하게 된다"고 테러방지법의 반역사성에 대해 경고했다.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민변) 최병모 회장은 "대외, 대내 정보를 한손에 쥐고 있는 국정원이 모든 정보를 관할하고 집행까지 하겠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국정원에게 얼마나 당했냐"며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국정원은 해외 정보만을 관할해서 관계기관에 배포만 할 수 있

게 하고, 수사권과 집행권을 뺏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에 체류하거나 입국하는 외국인은 잠재적 범죄자"

외국인에 대한 감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제8조 (외국인의 출입국규제 등)

1. 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그 소재지, 국내 체류 동향 및 테러자금 지원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2. 대테러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과 국외에 거주하는 테러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규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8조 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라는 부분은 상당히 모호해 사실상 외국인에 대한 감시 사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법안의 수정 이유에서도 '이슬람'을 테러세력으로 명시하고 있어 국내 무슬림에 대한 차별을 양산할 소지가 크다.

울산대 이계수 헌법학 교수는 "법안은 국내에 체류 중이거나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있다"며 "법률에 의해 뒷받침될 때, 이러한 인식이 수사기관은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급격히 확산되는 반인권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이번 테러방지법은 원안의 수정 이유를 "북한, 이슬람 등의 테러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북한을 테러단체로 규정해 남북관계 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조국 교수는 "북한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외에 따로 테러방지법상 '테러단체'라는 새로운 규정을 얻게 될 가능성이 많다"며 "이 경우 남북간의 새로운 분란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테러방지법, 테러 방지에 효과 없다"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측에선 9.11테러와 이라크 파병에 따른 테러의 위험성 때문에 이를 대한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행법과 제도로도 테러 방지는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병모 민변 회장은 "현재 경찰도 테러방지를 위한 특수부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방식을 유지하면서 국정원은 해외 정보를 수집해 경찰에게 제공, 협조해야 한다"고 테러 방지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또 "국정원에게 권한이 집중된다면, 유리한 정보만 공개하고 불리한 정보는 감출 것"이라며 테러방지법이 실질적인 테러 방지에 효과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국 교수도 "근본적으로 '대테러센터'라는 새로운 기구 없이도 국정원이 대테러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종법안에 규정돼있는 여러 테러방지 활동 역시 다른 여러 법률에 의거하여 수행될 수 있다"며 "국가대테러대책회의는 기존의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대테러센터는 재난 관리법상의 각종 기관의 기능과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테러방지법 통과시킨 정보위 12명 기억해 두겠다"

총 98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이 결성됐다. 공동행동은 19일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열린우리당의 천정배 의원이 참여했다. 공동행동은 현재까지 제정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의원은 한나라당 김홍신, 우리당 유시민, 무소속 정범구 의원 뿐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동행동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정원 강화법, 테러방지법 심의의 중단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 12인의 이름을 분명히 기억할 것"이라며 "제정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반인권, 반민주 의원이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보위에는 김덕규(위원장) 천용택(이상 열린우리당) 정형근 박현기 유홍수 이윤성 홍사덕 홍준표(이상 한나라당) 함승희 김옥두 박상천 정균환 의원 등 12명이 소속돼있다.

우리당 입장 애매모호

민변 최병모 회장은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이 법안을 제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알고 있다"며 "열린우리당은 당론으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천정배 의원은 "우리당 차원의 노력을 통해 권력남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당이 당론으로 테러방지법 반대를 채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보인다.

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정례

회의에서 "테러방지법안은 참여정부의 철학과 배치될 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스템과 연관된 사안"이라고 법안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과 함께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겠다"며 "국민의 공감과 지지속에 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과정을 거치자"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청와대 면담을 가진 후에, 20일 국회 앞 집회, 21일 국회의장 면담을 이어가며 입법 반대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여론은 국정원의 개혁과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중앙정보부와 안기부를 거쳐 지금의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본 사람은 주위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 우리 가족들은 많은 날조된 사건으로 간첩이 되고 빨갱이가 되어 피해를 입었다. 가족을 위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한 법안을 반대한다."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임기란 전 상임의장의 이같은 호소를 입법권을 편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박재한/기자

[인권하루소식 2003. 11. 20]

국회 법사위, 테러방지법안 일단 제동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 제정반대국민행동, "입법 강행시 국정원장 퇴진 요구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테러방지법안의 급행 처리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국회 법사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찬반논란을 벌이다 제2법안심사소위에 넘겨 심도깊게 논의하도록 했다.

법사위원회, "테러방지법 문제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국정원강화법,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은 "국정원은 정보기관으로 정보수집 활동을 해야지 행정권의 집행에 해당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며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소속 하에 둔다는 것은 인권 침해나 권리남용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필요한 경우 국정원 소속 하의 대테러센터의 장이 특수부대 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도 "국정원이 다른 기관들에 대해 기획·조정하는 대테러센터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지난 2001년 12월 통합

방위법이 제정돼 통합방위본부가 구성·운영됨으로써 모든 국가방위요소가 총동원체제로 되어있는데 법사위에서 따로 테러방지법을 놓고 논란을 벌일 필요가 있느냐"며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과정입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가뜩이나 높아진 테러 준동의 표적에서 한국이 자유롭지 않고 테러 가능성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정원이 기획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며 국정원의 권한 확대를 정당화했다. 함의원은 정보위 소속 위원이자, 지난 14일 정보위에서 통과된 테러방지법안의 공동 발의자이기도 하다.

테러방지법안이 논의될 제2법안심사소위 개회 날짜는 각 당 간사들의 조정 속에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27~28일 무렵 잡힐 예정이다. 2소위는 김용균, 심규철, 최연희, 함석재(한나라당), 함승희, 조순형(민주당), 최용규(열린우리당)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열린우리당, "법사위 통과 막겠다"

법사위 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우리당은 정책위원회를 열고, 법사위에서의 테러방지법안 통과를 막기로 했다. 테러방지법이 여러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데 따른 것이다. 김근태 원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현재의 테러방지법은 우리 참여정부의 기본적인 국정 철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고 회의에 참가했던 천정배 의원이 전했다. 열린우리당은 추후 정책의총을 열어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열린우리당은 '테러방지법 수정안 지지'를 당론으로 정한 것으로 보도돼, 인권·시민·사회·민중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산바 있다. 이와 관련, 18일 김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당론으로 정한 바 없다"며 "미리 법안의 문제를 알고 대처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열린우리당이 뒤늦게나마 법사위에서 테러방지법안의 통과를 막기로 결정한 것을 주목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빠른 시일 안에 정책의총을 열어 '테러방지법안 입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해서도 할 말을 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이 문제에 대한 공론 과정을 통해 '법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국정원 포로됐나

한편, 이날 낮 2시 공동행동 소속의 민변 쇠희모

회장 등은 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과 이용철 비서관을 만나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안이 무리하게 입법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 했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과거의 국정원과 지금 국정원을 오버랩 시키지 말라", "국정원이 악용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등 국정원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 또 "국회 법사위까지 간 마당에 정부가 할 역할은 별로 없다"며 국가 운영의 민주성이 걸린 중대한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쇠희회장은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행정부처들의 반대 여론도 수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한번 만들어진 악법은 폐지하기가 어렵고 이번 정부로 끝나지 않는다"며 "노무현 정부가 이 법의 제정을 방조한다면 개혁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국정원장 퇴진 요구도 불사"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의 입법 시도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국정원장의 퇴진 요구까지 나올 전망이다. 공동행동은 이날 아침 10시 의원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적 인사가 국정원장인데 무슨 걱정이냐고들 하지만, 이는 정보기관의 속성을 모르는 순진한 발상일 뿐"이라며 "국정원이 (계속) 테러방지법의 입법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국정원장의 퇴진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를 향한 각성의 목소리도 높았다. 공동행동은 "국정원의 권력 확대 음모에 장단 맞추며 국정원강화법의 제정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은 반인권·반민주 의원이란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는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국민의 여망인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 작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주영]

[인권하루소식 11. 21]

"인권 내팽개치고 국정원 밤그릇만 챙겨주나"
인권단체들, 테러방지법 앞장선 4인 의원 '반인권 의원' 선포

"지난 14일 테러방지법을 의결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인권이 심각한 위험에 빠지도록 선동한 이른바 국회 정보위원회 김덕규, 정형근, 함승희, 홍준표 의원을 '반인권 의원'으로 선포한다."

20일 겨울을 알리는 차가운 비가 내리는 가운데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소속 50여명은 국회 앞에 모여 테러방지법 제정에 앞

장선 4인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반인권 의원 선포식'을 개최했다.

공동행동은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국민을 일상적인 감시체계 하에 편입시키기 위한 반인권적 음모이며 반민주적인 악법을 만들어내는 폭거"라고 규정하고, 따라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선 의원들은 이미 국민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앞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대테러센터설치법'에 불과한 테러방지법의 제정에 앞장서는 의원들이 나온다면 그들 역시 '반인권 의원'으로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장유식 협동사무처장은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테러방지가 가능하며 국정원 개혁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9일 공동행동 대표단과의 면담과정에서 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의 "국정원의 대공수사분야가 폐기됐기 때문에 직원들이 쌓아온 경험을 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발언을 인용, "(이처럼)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직원들의 밤그릇을 챙겨주기 위한 법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형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테러방지법 상의 테러예방에는 철도, 항공 등 여러 산업의 안전예방도 포함된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노조 활동을 광범위하게 구속하게 될 것"이라며 테러방지법으로 인한 노동기본권의 후퇴를 우려했다.

선포식 참가자들은 모든 발언이 끝난 후 반인권 의원 '4명의 이름'과 '테러방지법'이 적혀 있는 풍선을 발로 밟아 터트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편 민변 쇠희모 회장, 친주교인권위원회 함께 웅 신부, 민가협 조순덕 상임의장 등은 21일 오후 2시 국정원장과 면담을 갖고, 테러방지법 제정 기도를 중단하라는 인권단체들의 요구를 전달할 예정이다. [임국현]

우리당 "테러방지법안 손질하자", 인권침해 소지들어 당론 바꿔

[경향신문] 2003-11-20 () 05면 1034자

열린우리당이 19일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테러방지법안의 재수정에 나섰다. 이에 따라 정보위를 통해 법사위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 또다시 수정이 가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당은 이날 열린 정례정책협의회에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기존 당론을 사실상 뒤집었다. 정보의 수집기능과 집행기능을 국정원에 함께 두는 현재의 법안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

에서였다. 우리당은 이에 따라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에서 통과한 3차 수정안을 다시 고쳐야 한다고 나섰다.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테러방지법안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보지 못해 문제점을 간과한 측면이 있었다"며 기존 당론 결정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김근태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참여정부의 칠학이나 원칙과도 연관이 된다"며 "법안 제정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국민의 권리와 인권,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내용들은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의원도 "테러방지법의 입법취지는 공감하지만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산하에 두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기색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국정원이 집행 기능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유사시 경찰과 군을 동원해야 하는데 대테러센터 산하에 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그러나 이미 3당 합의로 정보위를 통과한 이 법안이 법사위에서 다시 수정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분위기는 세차례나 수정을 거치면서 테러의 개념을 제한했고, 미신고죄 등 형사특별법적 요소를 모두 삭제했기 때문에 다시 고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에서 표결로 강행할 경우 수적 열세인 우리당으로서는 막을 방안도 없다.

변수는 인권·시민단체들의 반발이다. 이들 단체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법안을 강행통과시키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 등 총 98개 단체로 이뤄진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은 이날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 강화법인 테러방지법안 심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성진 기자Hongriver@kyunghyang.com

<취재수첩> 국정원의 '잔꾀'?

[문화일보] 2003-11-20 () 02면 912자

통상 정보기관은 테러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주지 않는다. 미국의 백악관·국방부·국무부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는 정보를 확인해주지 않는다"고 딱 잘라 말한다. 미 의회에서도 정보 관련은 비공개로 브리핑된다. 정보가 훌리나갈 경우 상대가 정보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알 카에다 관련자를 특수법원에서 비공개로 재판하고 있다. 공소장과 증인심문이 공개될 경우 중앙정보국(CIA)이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는지 '적'한테 모두 노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고한 아랍인을 증거도 없이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섣불

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의 이런 주장은 타당성이 있지만 그래도 굽히지 않고 '비공개'로 일관하는 것이 정보기관의 근본적인 '속성'이며, 또 '기밀'이어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20일 국회법사위에서 알 카에다 조직원이 국내에 수차례 참입했다고 보고했다.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올 3월 파키스탄에서 체포된 알 카에다 요원 칼리드 무하메드가 동남아 비행기 테러를 위해 마닐라~서울간 항공기에 탑승, 기내 보안상태를 점검했다는 사실을 CIA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밖에 몇 가지 첩보 혹은 정보를 공개했다. 한·미간 정보공조등이 자세하게 노출되었다.

이날 법사위는 테러방지법을 심의했다. 테러방지법이 국가보안법 못지않게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정원이 타 기관에 대해 대테러관련 기획조정을 하게되면 국정원의 힘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평소 '국민의 알 권리'에 인색한 국정원이 알 카에다 정보를 공개한 것은 국정원이 기획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법통과를 위해 잔꾀를 부려 정보기관의 금기사항을 스스로 깬 것이다. 국정원은 법의 문제점은 인정하면서 정보기관의 금기를 스스로 지켰어야 했다. jupiter@munhwa.co.kr

[한겨레 2003. 11. 21]

테러방지법 통과 불투명

'한겨레' 법사위원 설문조사..."반대·수정" 7명·찬성4·유보3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들의 절반이 테러방지 활동을 위해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반대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에서 한나라당·민주당·열린우리당 3당 합의로 의결돼 19일 법사위에 회부된 테러방지법안이 정보위 원안대로 처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겨레>가 21일 김기춘 위원장을 제외한 법사위 위원 14명을 대상으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원희룡·조순형 의원 등 2명이 반대의 뜻을, 심규철·양승부·조배숙·천정배·최용규 의원 등 5명이 수정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반면, 법안에 찬성한 의원은 최병국·함석재·홍사덕·함승희 의원 등 4명이었으며, 김용균·최연희 의원은 유보 입장을 밝혔다. 김학원 의원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반대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위원들은 대부분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둘 경우 국정원의

권한비대 가능성 △테러단체 규정의 모호함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 △현행 통합방위법과의 충돌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 19일 테러방지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때도 반대 의견이 많았다. 천정배 열린우리당 의원은 "고도의 기밀을 다루는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이 집행기능까지 맡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고,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도 "다른 국가기관의 기밀을 총괄해 기획·조정하는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산하에 두는 게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순형 민주당 의원은 "통합방위법이 있는데, 논란을 일으키는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다만 같은 당의 함승희 의원이 "국내에도 테러 가능성이 있어 대비해야 한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을 뿐이었다.

이에 따라 테러방지법안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된 뒤, 해당 상임위인 정보위로 되돌려질 가능성이 커보인다. 법사위 자체적으로 법안을 수정할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16대 국회에선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보위도 법사위가 지적한 사항을 수정해 다시 제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위 관계자는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되면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다"며 "이 과정에서 법안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

[중앙일보, 2003. 11. 23]

강법무 "정부추진 '대테러 방지법' 법치어긋나 반대" [중앙일보 신용호 기자]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정보위를 통과한 '대테러 방지법'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23일 "지난 19일 열렸던 당정 정책정책회의에서 康장관이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산하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한 대테러방지법은 법치주의 정신에 어긋난다. 테러문제는 법무부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법이 정부가 추진 중이라는 데 있다. 정보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장관이 정부 안에 반대해 깜짝 놀랐다"며 정부 내 혼선을 비판했다. 김덕규 의원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추진하고 있는 법안을 법무부 장관이 반대하는 것을 보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정부 내에서 사전 조율도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책회의에서 康장관은 "대테러 방지법은 '국민의 정부' 시절 만들어져 검토할 기회가 없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책회의에 참석했던 김성호 의원은 "그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국회 통과를 앞둔 사안이라면 사전 재검토가 있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호 기자 novae@joongang.co.kr

[프레시안 2003. 11. 21]

노무현정부에 '인권'은 있는가?

<주장> '위선의 권력'에 대한 저항은 시대적 필연

민주화된 시대를 내세우고 있는 노무현 정권에게 <인권>은 없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이 상실된 현실을 의미한다. 노무현 정권은 "위선의 권력"으로 자기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권은 천부적(天賦的) 권리가 된다. 이 권리가 포기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이다.

권력의 지속적인 속임수와 공권력을 빙자한 폭력,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그 권력의 정통성을 자신이 무너뜨리는 것이라. 그와 같은 권력의 교체를 향한 변혁운동의 발생을 필연적으로 가져온다. 노무현 정권은 지금 그 지점을 향해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민중의 저항 필연적

이는, 지난 해 봄부터 이 땅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서민대중들의 새로운 역사적 각성과 그 각성의 정치적 관찰과정인 민주혁명의 결실로 태어난 정권이 그 혁명의 정신을 하나씩 배반하고 반동화(反動化)하면서 도달하게 된 비극적 현실이다. 그러나 그 반동의 역사를 수수방관하면서 그 대로 허용할 정도로 이 나라 민중들의 힘이 더 이상 무력하지 않다. 민중의 숨결과 함께 하지 않은 권리가 민중의 저항에 직면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완벽한 오산이다.

오늘의 위기가 개혁정치에 대한 기득권 세력의 거대한 반격으로 인한 것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진상의 중심에는 기득권 세력 내부의 패권 장악을 위한 권력투쟁을 개혁으로 위장하고, 정작의 개혁과제의 요구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기만과 대응의 포악성이 존재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노동자·농민들의 시위와 폭발 반대, 부안 사태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시국과 관련하여 "지금이 정부에 대한 저항권을 발동할 시기인가?"라면서 이른바, "민주화된 시대의 현실을 퇴행시키고 있는 시위문화 비판론"을 꾸몄다.

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화와 타협의 틀을 넘어서고 있는 저항운동의 시대적, 윤리적 모순을 지적하고 나선 셈이다.

그러나 대화와 타협의 틀 자체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것은 정의를 요구하는 양심과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이들의 분노에 대하여 기만적인 대응과 반인권적 폭력 진압으로 일관한 노무현 정권 자신이다. 시대착오적 행태를 보인 것은 다름 아닌 노무현 정권이다. 원인과 결과를 호도하고 폭력적 진압에 대한 정당방위적 대응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오만과 관료주의적 독선으로 사태 악화

가령 현재 핵폐기장 설치문제로 격렬한 진통을 겪고 있는 부안의 경우, 중앙권력의 횡포에 대한 민중들의 정면 도전과 이에 대한 권력의 - 군사주의 통치시절에서나 볼 수 있는 - 반민주적인 긴급조치식 대응이 대치하고 있다.

부안사태의 핵심적 책임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는 노력과 과정 없이, 정치적 오만과 관료주의적 독선으로 소위 "국책 사업"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환경 파괴를 초래할 위험도 높은 사안을 억압적으로 밀어붙이려 한 노무현 정권에게 있다. 노무현 정권은 오늘의 위기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제공자인 동시에 사태악화를 자초하고 있는 당사자인 것이다.

비밀 경찰력의 강화와 이로 인한 인권유린사태를 냉고 있음이 비판되고 있는 미국의 테러방지법을 본뜬, <치안유지법>에 해당하는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는 상황도 노무현 정권이 이러한 법이 가져올 인권파괴의 가능성에 대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는 파시스트 권력으로 변화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 국제사회의 제3세계 테러리즘은 미국의 제국주의 질서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할 때, 테러의 근본원인은 미국의 정복주의적 지배정책의 폐기로 제거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일부 폭력적 양상으로 나타나는 민중들의 저항은 이들의 요구에 대한 외면과 정치적 독선에 근거한 <진압정책의 철폐>에서 우선 그 원인의 제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 통과 등으로 권력의 폭력성 강화 조짐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자신의 폭력은 정당화하고 그에 대한 자기방어적 대응은 불법적 행태로 규정함으로써 사태의 악순환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권력과 민중의 대대적 충돌로 점화해가고 있는 위기가 내다보이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투철한 신념과 인권수호를 위한 헌신적 자세가 공백인 상태에 있는 권력의 추악한 선택의 결과이다.

노무현 정권의 민주주의에 대한 자세는 대외정책의 사유방식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국가테러>의 완결판으로서 침략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 부시정권이야말로 국제 테러리즘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다. 진실이 그려함에도 미국 부시정권은 자신의 이라크 침략전쟁이 “중동지역의 민주화정책을 위한 선택”이라고 온 세계 인류의 양심에 맞서서 강변하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입을 맞추어 “미국의 노력에 의한 이라크의 민주화 운운”으로 파병결정을 정당화했다. 민주주의가 누구에 의해 파괴되고 있는지 현실에 눈을 감고 있는 자의 비굴한 발언이다.

소위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라는 노무현 자신의 정체성조차 스스로 배반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 “위선과 폭력으로 무장한 권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역사의 심판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지점으로 어쩔 수 없이 몰리고 있다. 이는 우리가 결코 원했던 바가 아니었으나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일대 결단을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제국주의 침략전쟁의 하수인이 되기를 결연히 거부하지 않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자본의 패권체제를 일방적으로 방어하며, 농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서민대중들을 비롯한 빈민들의 생활개선을 위한 정책제출은 방기하고 지역 주민들의 자치적 역량에는 철퇴를 가하고 있는 정부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게다가 한 지식인의 사상의 자유까지 냉전시대의 폐물인 “전향논리”로 강제하려는 구태를 혁파하지 못하고 있는 권력을 우리는 정당한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인가?

반인권적 권리 비판 공유, 확산되어가야

애초부터 역사의 육성에 귀를 기울일 자세와 역량이 없는 인물을 변혁의 지도자인 줄로 잘못 알 아본 우리의 책임이 더욱 크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는 그대로 침묵할 수 없는 것이다. 권리의 폭력적 행태를 단 하나라도 인정하고 지나가는 순간, 그것은 어느새 권리의 일상적 본성이 되어 민주주의를 기어코 질식시키고 만다는 점에서 이 나라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저항의 결단은 피할 수 없다.

권력의 논리에 그 사회를 복종시키려는 일체화(conformity)의 폭력에 대하여 미국의 20세기 최고 지성의 한 사람인 스캇트 니어링(Scott Nearing)은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저항의 성패는 그 사회의 중앙무대에서만이 아니라, 작은 마을 단위, 작은 직장을 포함하여 도처에서 권리의 논리에 대한 반대토론이 용기 있고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폭력적인 권리의 논리에 불복종하는 연대가 이루어질 때, 그 사회는 이미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강

조한다.

야만이 지배하게 할 것인가?

오늘날의 노암 촘스키 선배 격이 되는 진보적 저식인 스캇트 니어링은 그의 부인 헬렌과 함께, 1950년대 미국의 냉전체제가 강화되어가면서 매카시즘이 미국 전역을 휩쓸었던 시기, 3년간의 겨울동안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권력의 야만적 논리에 대한 저항의 동력을 확산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Maine, Social Science Institute, 1955)

그 과정에서 그는 권리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공유되어가는 과정의 중요성을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이 발언한다.

“인류의 양심에 대한 충성이 국가에 대한 충성보다 우선이다. 이를 역전시키려는 권력을 거부하지 못할 때 그 사회에는 야만이 지배한다. 그리고 그 야만은 어느 사이에 그 사회의 본성으로 자리잡아가게 된다.”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을 권리의 야만에 길들이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권리로 지켜내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될 것인지, 그 기로에 서 있다. 인류적 양심과 역사의 육성에 귀를 기울이면, 그 선택은 누구에게도 결코 어렵지 않을 것이다.

김민웅/프레시안 기획위원·시대소리 대표필자

[문화일보 2003. 11. 24]

국정원-법무부 ‘테러방지법’ 충돌
법무부 ‘법치주의 위반’ 제동, 국정원 강행

김상협기자 pppdemo@munhwa.com

인권침해와 정보기관의 비대한 권한강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이 정부 입안 및 국회 제출과정에서 부처간 충분한 논의없이 밀어부치기식으로 진행되면서 뒤늦게 혼란을 빚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국회 정보위는 3차례에 걸쳐 법안을 논의, 수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의 반대는 물론, 법무부 등 핵심 관련부처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법무부도 법제정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다 뒤늦게 문제를 제기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지난 19일 열린우리당과의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이 법이 법치주의 정신에 어

긋난다고 반대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24일 법무부는 입법과정 국정원의 독단을 지적하며, 법제정시 파생되는 법률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기하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섰다. 2001년 11월 입법예고된 테러방지법안은 2년여 동안 인권침해 논란 등을 거듭하다 최근 3차례 수정된 뒤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를 통과,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정원은 최초 발의 때 법무부 의견을 거쳤다는 이유로 이후 수정, 재수정을 거치면서 한번도 공식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난 3일 국회 주최로 4시간여 진행된 공청회에서도 법무부에 허용된 의견개진 시간은 5분에 그치는 등 언로가 원천차단됐다는 불만이다. 법무부는 또 현 입법안이 ▲국정원의 권한 및 기구 능력에 주력하고 ▲타 부처에 대한 국정원의 기획조정 권한을 강화하며 ▲통신비밀보호법 등 기존 법률의 개정없이 편법으로 (인권)침해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의 67가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핵심사안은 손대지 않은 채 법사위에 계류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의 이같은 주장은 국무회의 등 수차례의 심의과정에서 적극적인 입장 개진을 했다면 부처간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잃는다는 지적이다. 국정원은 이날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2년여동안 수정에 재수정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논의했고 대통령에게도 다 보고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그동안 우려돼온 인권침해 조항도 삭제했다”면서 “국정원의 월권에 대해 아직도 우려가 있는 것은 알지만 고영구 국정원장의 경우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정원 비대화가 기관장 특정인의 성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도화된 권력에 의해 추진돼온 경험에 비춰 여전히 우려는 불식되지 않고 있다. 국회법사위에도 타기관에 대한 국정원의 군림 가능성, 계엄에 의하지 않고도 군 특수부대를 동원 가능하다는 점, 테러단체의 모호한 규정에 의한 인권침해 가능성 등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뒤늦게 이 법안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간 정책 혼선과 갈등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는 가운데 고영구 국정원장과 강금실 법무장관 모두 인권을 강조해온 개혁성향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양자간 힘겨루기가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된다.

이인표·김상협기자 jupiter@munhwa.co.kr

[연합뉴스 2003. 11. 24]

국정원장 우리당에 테러법 협조요청

(서울=연합뉴스) 민영규 김중배기자 = 고영구(高

泳耆) 국정정보원장이 24일 국회로 열린우리당지도부를 잇따라 방문,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테러방지법의 연내처리를 위해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정원장이 법안처리 문제와 관련, 특정 정당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고 원장은 오후 4시께 박정삼(朴丁三) 2차장 등 고위 간부 10여명과 함께 국회본청 우리당 사무실을 찾아 1시간30분가량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과 잇따라 비공개 회동. “그동안 입법과정에서 여러가지 우려를 충분히 해소한 만큼 연내 처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고 원장은 “과거 국정원의 역할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산하에 두려는 것은 해외 정보기관과의 연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김성호 원내부대표와 김태홍(金泰弘) 천정배(千正培) 의원 등도 참석했다.

김 대표는 회동후 기자와 만나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산하에 둘 경우 정보기관이 행정권까지 갖게 되기 때문에 3권분립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고 과거 국정원의 행태로 미뤄 여러가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테러를 막기 위해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는 만큼 의원총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 대해 천정배 의원은 “지난 2001년 테러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될 때 형식적인 당정협의가 있었겠지만 오늘은 실질적인 당정협의였다”고 말했으나 국정원 관계자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반대가 가장 많아 도움을 요청한 것일 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25일 오전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테러방지법 처리 방향에 대한 당론을 조율한다.

youngkyu@yna.co.kr jbkim@yna.co.kr

[연합뉴스 2003. 11. 25]

변협, 테러방지법안 반대 의견
국정원 산하 ‘대테러센터’ 운영은 부적절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박재승 회장)는 25일 국가정보원이 발의,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해 위험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수정안이 규정한 테러, 테러자금, 테러단체의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권한남용 및 인권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다”며 “정보기관인 국정원에 테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 등의 권한을 부여한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어긋난 일”이

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수정안은 국정원이 운용하는 대테러센터가 관계기관이 설치한 테러사건 대책본부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돼 있으나 이는 정보기관이 행정기관에 군림하는 것"이라며 "조직과 정원의 비공개, 군특수부대 출동요청 조항 등도 충돌과 혼선의 우려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테러방지법안은 지난 2001년 11월 국정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지난 14일 국회정보위원회에서 법안의 처벌 조항과 형사소송법상 특례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이 의결,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상황이다. jbryoo@yna.co.kr

<시론> 국민을 배신할 것인가

[경향신문] 2003-11-24 () 12면 1973자

참여정부의 개혁이 지지부진하고, 미숙함과 시행착오로 일관할 때도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정책과 북핵위기, 적대적인 언론환경과 거야가 지배하는 국회, 열광적이지만 쉽게 동요하는 지지층-이 모든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이해심'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속속 벌어지고 있다. 참여정부의 철학과 원칙조차 의심스러운 반개혁적·반인권적 태도는 '테러방지법안'과 '집시법 개정안'을 통해 그 절정을 이루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 정보위는 '테러방지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테러방지법은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권한강화법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국정원이 '대테러센터'를 장악하고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을 기획·조정한다. 계엄 없이도 군병력의 동원이 가능하고, 감청 등 기본권 제한 근거가 마련되며,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합법화된다. 북한과 이슬람을 테러국으로 지목하여 남북관계에 친물을 끼얹고 공연히 이슬람 전체를 적대시하고 있다.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는 지적도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문제는 이처럼 논란 많은 법안에 대한 참여정부의 태도이다.

공약 뒤집은 '테러방지법'

노대통령은 후보시절 국정원 개혁을 강조하며 해외정보만을 다루는 해외정보처로의 전환을 공약했다. 비밀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국정원이 수사권을 행사하고 국내 정치사찰을 일삼으면서 수없이 인권침해와 간첩조작을 자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혁(국정원법 개정)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위 코드가 맞는 인사가 국정원장에

임명되었을 뿐이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참여정부의 인식은 한심한 수준이다. 필자가 만나본 정부 고위관계자는 "국가정보원이 많이 변했고,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더라도 인권침해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한다. 참여정부의 오만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집시법은 또 어떤가. 19일 행정자치위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은 1년여 전부터 의원들이 개별발의한 여의개의 집시법 개정안을 묶어 상임위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별안들이 대폭 수정되었고, 경찰측이 새로운 독소조항을 은근슬쩍 포함시켰음에도 공청회 한번 없이 밀실처리 되었다. 개정안의 내용은 온통 집회와 시위를 규제하겠다는 것뿐이다. 집회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 남은 집회와 같은 목적의 다른 집회를 금지하고, 외교기관 주변 집회 중에서 대규모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거나 휴일에 열리는 집회만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는가 하면, 관할 경찰서장이 고속도로와 전국 95개 주요 도로의 행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사전허가제'와 전혀 다르지 않다. 개정안에는 소음 규제, 학교시설이나 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 심지어는 사복경찰관의 집회현장 출입을 공공연히 인정하는 규정까지 들어있다. 지난달 말 헌법재판소가 "외교기관 부근 100m내 절대적 시위금지는 위헌"이라며 집시법을 개정할 것을 명했는데, 개정안은 그 취지를 철저히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이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특히 국민들이 삶과 권리에 직결되는 문제에 대한 의사표현을 위해 집회·시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민주사회的基本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법을 통해 정부의 실책을 덮어두려는 구시대적 자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폭력시위 엄단' '지도부 분리대응' '질서유지' 등 요즘 참여정부의 입에서 뛰어나오는 용어들이 과거 군사정권의 그 것과 어쩌면 그리 똑같은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초심잃고 인권도 도외시

노무현 정부가 초심을 잃고 반개혁적·반인권적 태도를 보인다면 정작 좋아할 사람들은 따로 있다. 먼저 비난받고 싶지는 않지만 정부가 나서서 한다면, '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 할 수구보수 세력이 얼마든지 있다. 노대통령은 자신의 원칙과 철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 바란다. 더 이상 국민들의 뒤통수를 때리지 말라.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오마이뉴스 2003. 11. 27]

<변협 등 각종단체, 테러방지법 반대 한목소리>
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의 테러방지법안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헌법상 문제가 있고, 국정원의 개혁방향에도 역행해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24일 제출한 데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00개 단체가 참여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도 25일 "반민주, 반인권적 악법인 테러방지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등 반대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변협의 반대 의견서에 따르면 "수정안이 규정한 테러, 테러자금, 테러단체의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며 또한 테러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권한남용 및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무제한적인 대테러활동에 대해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행정기관의 활동에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 그치는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정보기관에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은 국가의 민주적 운영에 위협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게 돼 민주국가의 권한배분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테러센터가 관계기관이 설치하는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될 경우 사실상 대테러센터가 테러현장에서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지휘하는 것이 돼 정보기관이 행정기관 위에 군림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특히 "대테러센터가 국정원에 설치되고, 그 조직이 국정원 직원과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나 경찰로 구성될 것으로 국정원은 파견된 검찰이나 경찰을 통해 수사에도 개입할 여지가 있다"며 "또 대테러센터의 장의 판단에 의해 군특수부대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고 군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가방위요소의 통합과 지휘체계의 일원화에 반하며 구체적으로 사태에 대한 대응에 있어 충돌과 혼선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도 "현재 국정원은 대테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왜 사활을 걸고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공동행동은 성명에서 "정보기관은 기본적으로 비밀주의를 속성으로 하며 예방이란 명목 하에 사람들을 잠재적 위험인물로 간주해 감시 대상에 두는 기관으로 민주주의와는 기본적으로 모순"이라며 "민주주의가 진전된 사회라면 정보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행정

에 개입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견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그러면서 "진정 참여정부를 '열린'당을 지향한다면 열린우리당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힘을 빼 게 아니라 국정원 개혁에 착수하는 현명함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특히 "막연히 테러방지란 명분에 놀려 법을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업무의 중복과 예산의 낭비를 놓고 나아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에 국민이 준 입법권한을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러방지법안은 지난 2001년 11월 국정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지난 14일 국회정보위원회에서 법안의 처벌 조항과 형사소송법상 특례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이 의결,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상황이다.

[인권하루소식 2003. 11. 28]

"테러방지법과 집시법 개악안은 무덤으로"
인권사회단체들, 국회 앞 두 악법 사망선포식
열어

테러방지법안과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7일 전국민중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테러방지법안과 집시법 개악안의 사망선포식을 개최하고, 두 법안의 사망을 알리고 화형식을 진행했다.

단체들은 선포문을 통해 테러방지법 제정과 집시법 개악 시도는 "민중의 피와 목숨을 바친 투쟁의 결과로 쌓아올린 소중한 인권과 민주주의를 그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조치"이며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리는 것이요, 군사정권 시절로 회귀하는 조짐"이라고 선언했다.

참가자들은 국민의 인권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는 악법이 두 개씩이나 국회에 상정되었고, 더군다나 여론조성과정도 없이 날치기 식으로 법안 통과가 기도되고 있는 데 대해 분노를 표했다. 참가자들은 "테러방지법=인권포기법"과 "국민에게 집회의 자유를" 등의 팻말을 들고 두 법안에 대한 '절대 반대'의 뜻을 밝혔다.

발언에 나선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은 "국정원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테러방지법을 동원해 국민 기본권 발목잡기에 나서는가"라며 국정원의 권력 확장욕을 비판했다. 민가협 임기란 전 상임의장은 "과거 우리와 함께 투쟁했던 고영구 국정원장은 이제 테러방지법을 절대적으로 옹호하기에 여념이 없다"며 테러방지법 입법저지는 결국 민중의 뜻임을 강조했다.

집시법 개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져 나왔다. 민가협 박성희 간사는 "집시법이 개악되면 우리는 100명 이하만 모여 침묵시위를 벌일 수밖

에 없을 것"이라며 악법은 아예 만들어지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균 상임활동가도 "경찰이 집시법 개악안을 내놓자 행자위는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은 채 1년 동안 한번도 열리지 않았던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경찰의 들러리 역할을 한 국회를 비판했다.

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는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이 아닌 국정원과 경찰을 대변하는 조직"이며 "앞으로 국정원 개혁과 집시법 개선에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임국현]

라 보좌관, 파병안 정치권 의견 반영
정부, 대테러상황실 설치·테러방지법 제정 조속 추진

작성일자: 2003-12-02

송정미 기자 (jmsong@tongilnews.com)

정부는 이라크 현지 한국인 피격 사건과 관련해 높아지고 있는 '파병 철회'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파병 원칙을 고수하면서 구체적인 파병안(案)은 정치권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물의를 빚고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속히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방침을 정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파병원칙 고수, 파병안 정치권 의견 반영할 것

라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 정부의 파병원칙은 고수하되, 파병부대의 성격, 규모, 파병시기 등은 정치권의 의견을 반영할 것임을 시사했다.

라 보좌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라크 현지 한국인 피격사건이 파병부대의 구체적 안 마련에 영향이 미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파병원칙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원칙 고수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방장관 등이 정치권에 여러 대안과 각 대안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정치권의 의견을 들어 파병 구체안을 마련하는데 참고하게 될 것"이라면서 "국회조사단과 국방위, 정당 대표들과 만나 의견을 듣고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라종일 보좌관은 일각에서 파병시기를 내년 4월 이후로 예측하고 있는 것과 관련, "총선일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지 적응훈련이라든지, 인원을 선발하고 장비를 갖추

고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주말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파병 구체안의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어제 안보관계장관회의 얘기가 있었는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가 열린 것으로, 현재로선 일정이 잡힌 게 없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내일(3일) 이라크 현지 국회조사단을 청와대로 초청, 조찬을 함께 하며 현지 치안 상황 등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가파병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국정브리핑 2003. 12. 2]

정부, 대테러상황실 설치·운영
-테러방지법 조속한 제정 추진키로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라크 현지에서의 추가 테러 피해 방지 및 국내테러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교민안전 및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등 분야별 대테러 대책을 확정하여 관계기관 협동으로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고건 국무총리는 "최근의 연쇄적 인 테러사건은 국제테러가 본격화되고 있는 조짐"이라면서 "국민들이 대외여건에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각 기관이 치밀하게 대처하고 수시 점검하여 테러방지에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1단계로 국정원, 행자부,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대테러상황실을 설치·운영해 나가고, 2단계로 사태의 진전에 따라 전 분야에서 상황실을 즉각 가동할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해외파병 부대의 경우 상황 호전시까지 영외 활동을 일시중지하고, 인근 미군 부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파병부대원의 안전대책을 강화키로 하는 한편, 항공기 안전을 위해 테러우범국가를 경유하거나 출발한 항공기 중 필요한 경우에는 X-ray 투시기로 모든 화물을 검색하고 모든 국제선 항공기에 남자 보안승무원을 탑승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의 우리 민간기업 직원의 피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외교부 아중동 심의관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키로 하고, 이와 함께 앞으로 당분간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면서 테러에 적극적으로 대처함과 아울러 체계적인 테러에 대한 대응을 위해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제정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그동안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될 소지가 있다며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해온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

사회단체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대테러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된 분야별 대책이다.

① 재외국민, 공관원, 기업체 근로자, 파병부대 등 안전관리 강화

▲주체국 관계당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공관 등 주요시설에 대한 경비,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 재외공관 안전대책 강구

▲재외국민의 공관과의 비상연락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테러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외국민 안전대책 강구

▲비상연락망 구축, 현지경찰과 협조체계 유지, 단계별 철수계획 수립 등 해외건설 근로자 대책 확립 및 현장안전 관리 강화

(중동지역 11개국에 근로자 3,403명, 이라크에는 오무전기 근로자 68명 근무중)

▲해외 파병부대의 경우 현지 상황 호전시까지 영외활동을 일시중지하고, 현지 공관 및 지역책임 동맹군/인접 미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이라크 피격사건 사고수습방안

- 대사관 관계자 현지 파견
- 현지 공관 등을 활용, 요르단이나 쿠웨이트를 경유하여 시신 국내 운구토록 조치
- 부상자 본국송환 지원
- 피해자 가족 현지 또는 인근국가 방문 협조(여권, 사증발급)

② 출입국 및 화물검색 강화

▲입국규제자 검색강화(국제테러분자 입국금지) 조치 및 여권 위·변조 여부 철저적발 (03.12.1일 현재)

입국금지자 29,706명중 국제테러분자 4,432명)

▲재외공관 사증발급심사 강화

▲테러우범국가 출발·경유한 선박 및 항공기중 일부에 대해서는 X-ray 투시기로 전수검사

▲여행자 신상정보 사전입수율 상향조정(현행 75%→연내90%)

▲휴대품 검사비율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현행 3.5%→파병후 7%) 등

③ 주요시설 경계 및 안전활동 강화

▲미국과 파병국 시설 등 외국시설 234개소에 3,221명 배치

▲주한 외국공관 183개소에 대한 대테러 실태 점검(11.25~12.4)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 11개소에 3,923명 배치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2,186명 배치하여 안전순찰 강화

▲총포·화약류 취급업소(2,282개소)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사이버테러에 대비 24시간 모니터링 실시

▲외국인 집단거주, 출입지역에 대한 순찰과 외사·보안활동 강화

④ 화생방물질 관리강화

▲원자료발전소(18기) 등 원자력 관련시설의 경비 및 경계 강화

▲방사성물질 사용기관(약2000개)의 방사성물질 일일점검 실시 및 이상시 즉시 신고체계 구축

▲두창 예방백신 비축, 탄저 및 페스트 예방치료 용 항생제 비축 등 파견군인에 대한 생물테러 대비 지원(군의 요청있을 시 즉시 접종 가능)

▲화학사고 대응정보시스템 운영현황 점검 및 기능 보강

⑤ 공·항만 안전대책

▲조정실 방탄문 설치(158대), 기내무기 탑재(전자충격기, 가스총)(기조치)

▲보안검색 주체를 항공사에서 공항공사로 변경(기조치)

▲모든 국제선에 남자 보안승무원 탑승

▲테러장비 반출입, 항만테러 등 차단을 위한 항만경비보안 강화

▲국제여객선 항로상(18개 항로 26척) 경비함정 순찰강화

▲저유소·LNG기지 등 국가중요임해산업시설(50개소) 해상경비 강화

정부, 테러 우려시설 합동점검 추진

정부는 2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라크 현지에서의 추가 테러 피해 방지 및 국내테러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교민안전 및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등 분야별 대테러 대책을 확정하여 관계기관 협동으로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검토된 주요대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1단계로 국정원, 행자부,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대테러상황실을 설치·운영해 나가고, 2단계로 사태의 진전에 따라 전 분야에서 상황실을 즉각 가동할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 국정원 상황실(12.1), 행자부 상황실(12.3), 외교부 국외사건 대책본부(12월초), 관세청 상황실(편성은 완료, 유사시 즉각 가동), 환경부, 복지

부. 과기부, 해경청 등(유사시 즉각 가동)

해외파병 부대의 경우 상황호전시까지 영외활동을 일시중지하고, 인근 미군 부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파병부대원의 안전대책을 강화키로 하는 한편 항공기 안전을 위해 테러우범국가를 경유하거나 출발한 항공기중 필요한 경우에는 X-ray 투시기로 모든 화물을 검색하고 모든 국제선 항공기에 남자보안 승무원을 탑승시키기로 하였다.

특히 해외에서 근무하는 민간인 근로자에 대한 테러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해외근로자의 소재 파악과 안전대책 강구가 절실히 요구되며, 테러에 대한 경각심고취와 해외공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등을 교육시키거나 안내해 나가는 한편 이라크를 포함한 테러위험국가와 주변국에 출입국하는 근로자나 여행자에 대해 소재파악·신고를 더욱 철저히 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간에 협의·추진하기로 했다.

중동지역에서 근무하는 우리의 해외건설 근로자(11개국 3,403명)의 안전을 위해 1단계로 건교부, 외교부, 해외건설업체간 긴밀한 보고연락체계를 확립하여 현장안전관리를 강화하고 2단계로 상황악화시에는 건설근로자의 대피 또는 철수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의 우리 민간기업 직원의 피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외교부 아중동심의관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키로 하였다. 이와 함께 앞으로 당분간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테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체계적인 테러에 대한 대응을 위해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제정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고건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의 연쇄적인 테러사건은 국제테러가 본격화 되고 있는 조짐"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민들이 대외여건에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각 기관이 치밀하게 대처하고 수시점검하여 테러방지에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고건 국무총리는 지난 11월30일 이라크에서 발생한 한국인 피살사건으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유족에 대한 애도를 표명하고, 부상자 치료와 사망자 송환 등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그동안의 안전대책을 재점검하고, 현지에서 활동중인 민간인의 소재파악과 이들의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함께 지시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과 총리실이 협조하여 정부합동으로 각 기관의 테러대비 태세와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활동 실태를 종합 점검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분야별 대책은 다음과 같다.

① 재외국민, 공관원, 기업체 근로자, 파병부대 등 안전관리 강화

▲주재국 관계당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공관등 주요시설에 대한 경비,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등 재외공관 안전대책 강구
▲재외국민의 공관과의 비상연락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테러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외국민 안전대책 강구

▲비상연락망 구축, 현지경찰과 협조체제 유지, 단계별 철수계획 수립 등 해외건설 근로자 대책 확립 및 현장안전 관리 강화
(중동지역 11개국에 근로자 3,403명, 이라크에는 오무전기 근로자 68명 근무중)
▲해외 파병부대의 경우 현지 상황 호전시까지 영외활동을 일시중지하고, 현지 공관 및 지역 책임 동맹군/인접

미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이라크 피격사건 사고수습방안
○ 대사관 관계자 현지 파견
○ 현지 공관 등을 활용, 요르단이나 쿠웨이트를 경유하여 시신 국내운구토록 조치
○ 부상자 본국송환 지원
○ 피해자 가족 현지 또는 인근국가 방문 협조(여권, 사증발급)

② 출입국 및 화물검색 강화

▲입국규제자 검색강화(국제테러분자 입국금지) 조치 및 여권 위·변조 여부 철저적발 (03.12.1일 현재)
입국금지자 29,706명 중 국제테러분자 4,432명)
▲재외공관 사증발급심사 강화
▲테러우범국가 출발·경유한 선박 및 항공기중 일부에 대해서는 X-ray 투시기로 전수검사
▲여행자 신상정보 사전입수율 상향조정(현행 75%→연내90%)
▲휴대품 검사비율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현행 3.5%→파병후 7%) 등

③ 주요시설 경계 및 안전활동 강화

▲미국과 파병국 시설 등 외국시설 234개소에 3,221명 배치
▲주한 외국공관 183개소에 대한 대테러 실태 점검(11.25-12.4)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 11개소에 3,923명 배치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2,186명 배치하여 안전순찰 강화
▲총포·화약류 취급업소(2,282개소)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사이버테러에 대비 24시간 모니터링 실시
▲외국인 집단거주, 출입지역에 대한 순찰과 외사·보안활동 강화

④ 화생방물질 관리강화

▲원자료발전소(18기) 등 원자력 관련시설의 경비 및 경계 강화
▲방사성물질 사용기관(약2000개)의 방사성물질 일일점검 실시 및 이상시 즉시 신고체계 구축
▲두창 예방백신 비축, 탄저 및 폐스트 예방치료 용 항생제 비축 등 파견군인에 대한 생물테러 대비 지원 (군의 요청있을 시 즉시 접종 가능)
▲화학사고대응정보시스템 운영현황 점검 및 기능 보강

⑤ 공·항만 안전대책

▲조정실 방탄문 설치(158대), 기내무기 탑재(전자충격기, 가스총)(기조치)
▲보안검색 주체를 항공사에서 공항공사로 변경(기조치)
▲모든 국제선에 남자 보안승무원 탑승
▲테러장비 반출입, 항만테러 등 차단을 위한 항만경비보안 강화
▲국제여객선 항로상(18개 항로 26척) 경비함정 순찰강화
▲저유소·LNG기지 등 국가중요임해산업시설(50개소) 해상경비 강화

문의, 국무조정실 총괄심의관실 김종문서기관 02-730-5400

[문화일보 2003. 12. 2]

'국내테러 가능성' 경비강화
정부 '이라크 한국인 피살' 대책 안팎

조용우기자 ywc@munhwa.com

당초 비전투병 위주 파견으로 기울었던 정부가 2일 추가 파병 부대에 '경계요원'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은 추가 파견 장병들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 민간인에 대한 테러가 현실화됨에 따라 국내 테러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전방위적인 대테러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내 기류 변화=당초 전투병 파병 불가피론을 꾀던 외교 국방라인 당국자들은 물론 비전투

병 위주 파견론을 주도했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들도 '경계요원' 증원 필요성에 찬감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고려 배제' 원칙을 밝힌 바 있긴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자칫 우리 군에 희생자가 생길 경우 국내 여론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최근 이라크 치안 상황 등을 감안할 때 파견 부대의 경계를 담당할 경계요원 비중을 늘려야 하는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추가 파병의 최종 결정 시기가 늦춰지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미리 방침을 정해놓고 홍보성으로 여야 정치지도자들과 협의하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정부 방침이 최종 결정돼도 국내외적 상황이 위나 급변하다보니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테러 대책=정부는 우선 재외국민, 공관원, 기업체 근로자등 민간인과 서희·제마부대 등 해외 파견 부대등의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파병부대의 경우 현지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영외 활동을 중단하고 민간인은 우리 공관과의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테러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테러방지 법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협조를 거듭 당부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내 테러 방지를 위해

◆입국 규제자(국제테러분자) 검색을 강화하고 여권의 위변조 여부를 철저히 적발하기로 했다. 또 재외공관의 사증 발급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테러 우범 국가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한 선박과 항공기중 일부에 대해선 X레이 투시기로 전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테러 방지를 위해 모든 국제선에 남자 보안 승무원을 탑승시키는 한편 테러장비 반출입, 항만테러 등을 차단하기 위한 항만 경비 보안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 화생방 테러에 대비해 원자력 발전소 18기등 원자력 관련 시설 경비를 강화하고 탄저·페스트 예방 치료용 항생제를 비축해 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용우기자 ywc@munhwa.com

[연합뉴스 2003. 12. 4]

이라크 파병반대 등 도심집회 잇따라(종합)

(서울=연합뉴스) 정운섭기자 = 이라크 파견 한국인 근로자 피살사건으로 파병반대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라크 파병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가 4일 서울 도심

에서 잇따라 열렸다.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인 근로자 피격사격이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지체없는 파병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과 4당이 국민의 압도적인 파병반대 여론을 배제하고 파병을 강행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상국민행동은 주말인 6일 오후 서울시청 일대에서 열리는 '2003 민중대회'에 참여, 파병철회를 요구하는 강력한 시위를 전개하고 15일과 20일에는 청와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사이버 시위를 펼치기로 했다.

또 오는 8~12일을 이라크 파병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묻는 '국회의원 파병찬반 조사기간'으로 정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20일에는 광화문 일대에서 '파병철회 광화문 인간띠잇기' 행사를 연다.

비상국민행동은 방송사가 중계하는 가운데 정부와 각 정당대표, 각계 국민대표가 참여하는 '이라크파병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대통령과 각 정당에 공개제안한다며 정부가 국회파병 동의안을 상정하면 국회 앞에 '파병저지 캠프'를 설치, 국회에서의 파병동의안 처리를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도 이날 오후 미 대사관 옆 정보통신부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이라크 파병방침을 고수해 테러를 부추기는 한편 국정원의 권한만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을 테러대비책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테러방지법 중단과 파병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기독교 장로회 소속 신도 100여명도 오후 정보통신부 건물 앞에서 파병반대 기도회를 가졌다.

또한 덕수궁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반대 시민모임 회원 20여명은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덕수궁터인 옛 경기여고 부지에다 미국 대사관을 신축한다면 왜곡된 한미 관계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덕수궁터는 복원돼야 할 문화유적"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소속 20여명은 오전 탑골공원 앞에서 최근 동작구 상도동 철거지역 세입자와 용역업체 직원간 충돌사태와 관련, 집회를 갖고 "철거건물 위에 망루를 세우고 저항하는 골리앗 방식의 투쟁은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한다"며 대책없는 강제철거에서 비롯된 폭력사태 근절과 철거민들의 주거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jamin74@yna.co.kr

[한겨레신문 12월 8일자 '왜냐면']

테러방지법, 괴물의 탄생

이라크에서 한국인 노동자 2명이 괴살되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드는 일은 사건 발생후의 정부 대책이다. 정부는 전투병 파병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한편, 테러방지법의 연내 제정을 공언하고 있다.

'한국인 피격사건'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번 사건은 이라크를 불법 점령하고 있는 미국에 협조하는 이른바 '동맹국'들에 대한 무차별 보복공격에서 한국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라크 민중들은 후세인 독재에도 반대했지만, 미국의 점령정책에는 더 크게 저항하고 있다. 대다수 이라크인들은 재건에 필요한 국제 사회의 도움을 바라지만, 한국군의 파병을 원하지 않는다. 테러는 주변의 지원과 협력이 없으면 결코 확산되지 않는다. 테러리스트에게 은신처나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사람,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테러가 확산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미국은 이미 빠져나올 수 없는 높에 빠져있다. 단언컨대 테러에 대한 대책은 그 원인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명분없는 파병과 테러방지법 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한국에 대한 직접적 테러 위협이 높아지고 대테러정책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치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테러방지법은 결코 그 대책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 권한강화법'에 불과하며, 현 법이념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질서유지의 관점에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있어도, 그 제한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헌법 제37조 제2항)고 적시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안은 몇차례 수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테러, 테러단체에 대한 모호한 개념에 근거하여 '감청'을 무한정 허용하고, 계좌추적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한 법이다. 기본권 제한의 절대적 원칙인 필요최소한의 제한이라는 기준을 이미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 헌법은 "헌법기관 및 국가기관 중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기관은 반드시 의회의 법률로써 정하고, 그 법률은 헌법이 정한 정부조직원리, 권한분장원리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한 정부조직원리 중의 하나가 바로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분리, 군과 경찰의 분리, 집행기관과 정보기관의 분리다. 테러방지법은 이러한 헌법적 원리를 근간에서부터 흔들어놓고 있다. 법안에 의하면 정보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대테러센터가 집행기관인 행정각부에 대해서도 관여할 수 있고, 그들 기관의 업무가 대테러업무일 경우 이를 "기획, 조정"하게 되어 있다. 군을 포함한 특수부대의 출동을 '요

청'할 수도 있다. 이처럼 정보기관이 행정 각부의 업무에 대해 "기획, 조정"하고 군대의 동원을 요청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국정원은 미국의 예를 들고 있는 듯하다. 실제로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 내에는 테러업무를 총괄하는 센터들인 테러방지통합센터(TTIC·Terrorist Threat Integration Center)와 테러점검센터(TSC·Terrorist Screening Center)가 9·11 이후 각각 만들어졌다. 그러나 미국의 TTIC나 TSC와 한국의 대테러센터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들 조직이 군대의 동원을 요청하고, 행정각부 내에서 고유하게 대테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을 기획, 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연방국가의 특성상 분산된 정보회들의 흐름을 원활히 하며, 방대한 연방정보기관인 CIA나 FBI의 대테러업무수행의 효율을 위해 자체 내의 훈령으로 만든 것이 TTIC와 TSC이다. 더구나 이들 기구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실제 테러방지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을 덧붙여둔다.

현재 테러방지법안은 정보위를 통과한 후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국회 법사위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법률안을 심사할 의무가 있다. 국회가 테러위험에 대한 단세포적인 상황논리에 좌우되어 위헌적인 법률을 통과시키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테러방지법이라는 '괴물'의 생산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이라크 파병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다.

장유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문화일보 2004. 1. 5>

미입국자 인권침해 논란
오늘부터 외국인 사진·지문채취

이미숙기자 musel@munhwa.com

미국 정부가 5일부터 미국의 115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사진촬영과 지문채취를 시작했다. 미국은 이 조치가 테러범 입국방지와 추적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하지만 외국인들의 프라이버시가 그대로 노출되는 등 인권침해 우려가 높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미 비자면제협정을 맺은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일본 등 선진 27개국에 대해서는 면제조치를 하고 있다. 아시아와 중남미 국가들의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사진·지문 채취 방식=국토안보부는 미국의 전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사진과 지

문을 채취하기 위해 3억8000만달러를 들여 '유에스 비지트(US VISIT, United States Visitor and Immigrant Status Indicator Technology)'라는 방문·이민자 신분인식기술을 만들었다.

국토안보부 김벌리 외이스먼 대변인은 4일 "통상 미세관에서 비자와 여권 검사에 들어가는 시간은 1인당 60~90초인데, 사진과 지문채취작업에는 10~15초가 소요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것 때문에 공항입국수속이 크게 늦어질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문채취 등을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2300여만명의 외국인들로서는 불편과 불쾌감을 심하게 느낄만한 시간이다. 국토안보부는 유에스 비지트 시스템을 올해말까지는 모든 육상입국지, 2005년말까지는 모든 해상입국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방문객 사진·지문 어디에 쓰나=국토안보부는 유에스 비지트 자료를 활용해 미국에 입국한 모든 관광객과 방문객들을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했다 해도 비자만료 기간이 넘은 경우에는 일단 범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때문에 추후에 미국에 재입국할 때 제재를 당하게 된다. 학생비자로 입국한 외국학생들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특별추적을 하게 된다. 이것은 9·11테러 관련자중 2명이 학생비자로 입국,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 테러에 가담했기 때문이라고 국토안보부측은 설명했다.

◆미국내외의 반발확산=미국의 시민단체들은 미국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미시민자유연합(UCLU)의 배리스타인하트 국장은 "부시행정부가 모든 사람의 생물학 정보 취득시스템을 만든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오 르라 다 실바 대통령은 "부시행정부의 조치는 나치가 범한 죄악의 인종차별적 행위와 같다"고 비판하면서 3일부터 브라질에 입국하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똑같은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브라질에 입국하는 모든 미국인들은 국토안보부가 하는 것처럼 사진과 지문을 채취당하게 된다. 브라질 관광청은 하루 1300~1800명의 미국인들이 사진과 지문채취를 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브라질은 미국의 조치에 대한 항의표시로 이미 지난 1일부터 자국을 방문하는 미국인들에 대해 지문채취와 사진촬영을 실시하고 있다.

워싱턴=이미숙특파원 musel@munhwa.co.kr 기사 게재 일자 2004/01/05

<한겨레신문 2004. 1. 4>

미. 5일부터 입국자 사진촬영·지문채취

오는 5일부터 로스앤젤레스 톰 브래들리 터미널 등 미국내 주요 공항과 항구 등을 통해 입국하는 대부분 외국인은 당국의 디지털 사진촬영과 지문채취에 응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과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27개국과 특별 협정을 맺고 있는 캐나다 출신 방문객은 이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올해만 약 2천300만명의 외국인 방문객에게 이 조치가 적용될 전망이다.

아사 허친슨 미 국토안보부 차관은 5일 LA 공항을 방문, 미 전역 115개 공항과 14개 항구에서 시행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가 아닌 모든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입국심사관의 지시에 따라 심사대에 설치된 전자 지문채취장비에 좌우 검지를 번갈아가며 5초씩 지문을 찍은 뒤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게 된다.

생체인식정보에 기초한 '미 방문자 및 이민자 신분 인식기술(US-VISIT)'로 일어진 자료는 국토안보부는 물론 중앙정보국(CIA) 등 관계기관이 공유, 테러리스트 '블랙리스트'를 포함한 다른 자료와 함께 관리된다.

이 프로그램은 공항과 항구를 통한 입국자 대부분에게 해당되며 캐나다, 멕시코 국경 등 육로를 통과하는 이들은 오는 2005~2006년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안보부의 한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는 비자 소지자들이 국내 행선지로 출발하기 전 해당 국가 공관에서 지문채취나 입국심사에 필요한 사진을 촬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파울루 공항을 비롯한 브라질의 여타 공항에 이어 리오 데 자네이로 공항도 3일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한 대응조치로 자국에 입국하는 미국인에 대해 지문채취와 사진촬영을 의무화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지구촌 전망대> 문화일보

美 '빅브라더의 공포정치'
윤성혜기자 shyoon@munhwa.com

이라크전쟁은 끝났으나 세계평화는 오지 않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테러퇴치란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켰지만 종전 이후 세계적으로 테러의 공포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라크전쟁에서 약 2만t의 폭탄이 이라크 땅에 쏟아지고 430명 이상의 미군과 수만명의 이라크인이 희생됐지만 정작 부시 대통령의 표적이었던 사담 후세인은 어쨌든 살아남았다. 반면 전승국의 미국민들은 오히려 한울의 말총 끝에 매달린

'다모클레스의 칼' 아래서, 끝없는 테러의 위협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항공기를 이용한 미본토에 대한 테러위협 정보가 있은 이후 프랑스·멕시코·영국발 미국행 여객기의 운항 취소와 지연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이를 지켜보면서 세계 항공업계가 항공보안 강화 차원을 넘어 패닉상태로까지 빠져들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된다.

한 이슬람계 여성의 "왜 남편없이 혼자 여행을 하느냐"는 추궁을 당하는가 하면, 중량초과로 탑승이 취소된 뒤 그대로 실려간 임자없는 짐가방 하나 때문에 프랑스여객기가 비상착륙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지난 10월 '사우스 웨스트'의 기내 화장실에서 박스절단기와 같은 사소한 물건이 발견됐을 때도 미전역의 7000대가 넘는 민항기에 긴급 수색명령이 떨어지는 소동이 빚어졌다. 미보안당국의 미국행 항공기내 무장요원 탑승요구와 기내 갑시 카메라설치, 그리고 '컴퓨터에 의한 탑승객 신상 수집계획(CAPPSII)'이 오히려 안전비행을 위협하고 사생활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미국토안보부가 오늘부터 한국인을 포함, 미국 비자 입국자들에게 사진과 지문촬영등을 요구하자 브라질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자국 입국 미국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출국 절차를 실시, 맞대응에 나섰다.

테러 공포는 미국사회를 '톨레랑스 0' 상태로 전락시키고 있다. 특히 보안조치에 관한 한 미국에서는 단 한마디의 농담이나 불만도 용납되지 않는다. 미공항의 지나친 보안 검색에 대한 항의 표시로 프랑스 여성의 상반신을 차례로 벗어던지고 프랑스 남성이 혁대를 풀어헤쳤다하여 징역형의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는 모든 이의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 11월 '에어 프랑스'의 기장은 뉴욕 케네디 공항 금속탐지기 앞에서 농담삼아 신발 속에 폭탄이 들어있다고 말한 죄로 7년형을 사는 대신 5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했다. 2001년 11월 필라델피아 공항 검색대에서 '유에스 에어웨이'의 기장이 자신의 가방 속에 들어있는 손톱깎이를 '무기'라고 말하자 공항 전체가 소慨된 적도 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을 단지 실질적인 테러위협에 따른 사람들의 과민반응으로만 볼 수 없다는 데 있다. 부시 행정부는 결과적으로 이라크전쟁의 명목상의 목표인 대량살상무기 색출과 테러위협 제거에 실패했다.

부시 대통령이 이런 점을 가지고 정권재창출에 성공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외부의 위협을 정치적으로 역이용, 내부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시행정부는 지난해 국제테러조직인 알카에다를 제거한다면서 엉뚱하게 이라크를 침공한 것처럼 테러근절 명분을 내세워

공포정치를 택했는지도 모른다. 미보안당국은 9·11테러 이후 급조된 애국법(일명 반테러법)을 근거로 국가 전체를 요새화하고 개인의 자유구속을 서슴지 않고 있다. 지금대로라면 얼마안가 미국사회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나 영화 '이퀼리브리엄', '마이너리티 리포트' 등에서 묘사된 '빅 브라더'에 의해 철저히 감시받는 사회로 변할 것만 같다.

하지만 역사가 말해주듯 공포정치는 오래가지 못한다. 사람들이 벌써 피로를 느끼고 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미국에 막대한 부를 안겨주는 외국인들이 미국대학과 기업, 관광지 등으로부터 발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윤성혜 / 국제부 차장 shyoon@munhwa.co.kr
기사 게재 일자 2004/01/05

야 할 것이다. 수많은 외국인이 불쾌감을 느낀다면 그 자체가 이미 안보 환경을 악화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한겨레신문 2004. 1. 6>

'대테러' 지문채취는 인권 테러다

그러지 않아도 원성이 높았던 미국 방문 절차에 고약한 내용이 하나 덧붙었다. 어제부터 미국 전역의 공항과 주요 항구에서 시행에 들어간 '방문·이민자 신분인식 기술'(유에스 비짓)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외국인 방문자의 생체정보를 통합 관리해 테러 용의자를 가려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방문자는 의무적으로 지문 채취와 사진 촬영에 응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한 해 2300만에 이를 외국인 방문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고 각자 고유한 생체정보 제공을 강요함으로써 이중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특히 통상 범죄자 등 특수한 경우에만 시행되는 강제적인 지문 채취는 불쾌함을 넘어 새로운 국제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은 미국과 비자면제 협정을 맺은 유럽연합·일본·오스트레일리아 등 27개국과 캐나다를 제외하고 중동·아시아·아프리카·남미 등 의 나라를 주된 대상으로 해 인종차별 냄새도 풍기고 있다. 미국에 맞서 브라질이 입국하는 미국인에 대해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찍기 시작한 것도 어찌면 당연하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9·11 동시테러 이후 비자 발급 요건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36개였던 비자 신청 양식의 질문 항목이 50가지 이상으로 늘어나고, 발급 거부율도 높아졌다. 추가된 항목에는 병역 주특기, 지난 10년 동안 방문했던 나라, 이전에 근무했던 직장,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한 사회단체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다분한 것들이 포함됐다. 여기에다 대사관 쪽의 고압적이고 관료적인 태도까지 두드러져 한해 50만명 가까운 한국인 미국 방문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미국은 인권침해 소지가 없고 다른 나라의 불편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문 절차 마련에 힘써